

[최종보고서]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12.

- 책임연구원: 유 만 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신 민 정 (전, 사회서비스센터 연구원)
- 연구보조원: 이 승 주 (Adelphi University 박사과정)

제 출 문

강원도의회사무처 귀중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II.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III.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변화	4
1. 다문화가족의 개념	4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향	5
VI. 외국의 다문화정책 변화와 대응: 미국과 캐나다	01
1.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	10
2. 미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방향	12
3. 미국의 다문화이민 복지기관 프로그램	13
4.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변화	15
5.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당면과제	16
6.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사점	16
V.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 : 공급자 관점	81
1. 연구설계	18
2. 특화사업은 가능한가?: 예산의 제약과 실무자의 소진	18
3. 업무 부담의 과부하 및 지자체별 운영의 차이	20
4.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	21
5. 취업 및 취업교육의 문제	22
6. 이혼증가와 인권침해 그리고 센터대응의 한계	23

7. 자국민 네트워크 형성 강화	24
8.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25
9. 거점센터의 역할 재정립 문제	26
10. 기타	27
VI.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 분석 : 이용자 관점	82
1. 조사설계	28
2. 조사대상	28
3. 조사내용의 구성 및 분석방법	29
4. 분석결과	31
VII. 결 론 : 요약 및 정책제언	6
1. 이용자	61
2. 공급자	63
부 록	66
[부록 1]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6
[부록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요조사 설문지	87
참고문헌	101

표 목 차

〈표 1〉 설문조사 구성체계	29
〈표 2〉 일반적 특성(개인특성)	32
〈표 3〉 일반적 특성(가구특성)	33
〈표 4〉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
〈표 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	35
〈표 6〉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도	36
〈표 7〉 한국생활의 어려움	37
〈표 8〉 삶의 만족도	38
〈표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및 만족도	39
〈표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미사용 사유	40
〈표 11〉 선호프로그램 유형	41
〈표 1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요인	42
〈표 13〉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43
〈표 14〉 자녀의 발달주기	44
〈표 15〉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44
〈표 16〉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의 어려움	45
〈표 17〉 만 5세 이상 자녀 양육의 어려움	46
〈표 18〉 자녀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47
〈표 19〉 자녀 돌봄 대처	47
〈표 20〉 돌봄의 주체	48
〈표 21〉 한국어 실력 수준	49
〈표 22〉 한국어 학습 및 교육 경험	49
〈표 23〉 참여 희망 학습 및 교육	50
〈표 24〉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51
〈표 25〉 취업여부 및 의사	52
〈표 26〉 사업장 형태 및 임금 여부	52
〈표 27〉 현재 및 희망직종	53
〈표 28〉 직업 알선경로	53

<표 29> 직장생활의 어려움	54
<표 30> 직장생활 지원관련 희망 서비스	55
<표 31> 임금 수준	55
<표 32> 예상되는 구직과정의 어려움	56
<표 33> 공동체 및 사회참여 수준	57
<표 34>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	57
<표 35> 사회참여의 어려움	59
<표 36> 거주지 만족도	59
<표 37> 향후 거주 의사	60

< 요약 >

1. 연구 배경

- 2018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31만 6천가구(가구원 96만명)으로 전체 가구대비 1.6%(가구원 1.9%)임.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에 따라 증가세는 점차 둔화함. 거주지역은 경기(29%), 서울(22%), 인천(6%) 등 수도권에 집중. 2018년 강원도 인구는 1,561,313명 중 외국인 등록인 수는 18,261명으로 도(道) 전체인구 대비 8.55%임. 다문화 가구 수는 7,915가구이고 가구원 수는 26,922명임. 도내 다문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대비 약 7.71% 증가함.
-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초기적응 중심이었음.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유형(한부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다문화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가 필요함. 최근 다문화가정폭력,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동안의 영유아 자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조의 변경에 따라 강원도 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역시 도내 물리적 환경, 다문화가족구성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초기 적응지원정책이 세밀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정착화에 따라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가정폭력과 다양한 다문화가족 유형 증가에 대응하도록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등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첫째,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획일적인 사업을 넘어 강원도의 지역적,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는 것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의 실태를 파악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임. 또한 이용자는 욕구에도 지원되지 않는 사업을 제안할 것임.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와의 면담(FGI)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함.

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 연구를 병행함. 문헌 연구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기본계획 등을 분석함.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는 문헌과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 분석함. 실증조사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이용자의 이용실태조사와 센터장의 집중면담이 이루어짐. 실증조사는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함. 종사자(센터장) 면담은 집단면담과 함께 연구자가 방문하여 1:1 면담 형식으로 진행함.

4. 외국(미국과 캐나다) 다문화정책 변화의 시사점

-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주목되는 변화 경향으로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화를 지목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이민 배경(인종, 언어, 국가)을 가진 사람이 새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네트워크로 작동함. 다음으로는 기관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 내 다문화·이민·난민 가정에 대한 인식 고취 또는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그 결과 다문화가족·이민 가족들의 지역 내 소속감 형성과 고립감 해소하는 데 기여함. 예를 들어, 기관과 지역 학교가 교육 파트너십을 맺어 다문화·이민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한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어 주류 사회에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함.
- 종교지도자와 함께하는 지지시스템의 강화 역시 주목되는 경향성임.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지도자 (목사, 집사, 등) 혹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지원함.
- 마지막으로 이민·다문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구사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 강조함. 서양 문화와 시스템 (미국/캐나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언어문제는 이민자 가정의 정착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5.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결혼이민자는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 수준은 ‘본인의 부모(4.43)’, ‘자녀(4.45)’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3.79)’와 ‘배우자의 친척(3.81)’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다소 높

음.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3.75)’와 ‘기타 동거 중인 가족들’에게 느끼는 관계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18.4%로 가장 높음.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 16.3%, ‘취업 및 구직의 어려움’ 14.5%,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11.3% 순으로 나타남.
-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의 이용여부와 만족도를 보면,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과 한국어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이용 경험도 높고, 만족도 역시 각각 4.3점과 4.4점으로 높았음. 이외의 프로그램은 ‘아이돌보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34.1%, ‘도서관(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39.8%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지만 만족도 수준은 4.2-3점 대로 높은 수준임.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의사소통 문제, 정보전달 문제 등)’으로 21.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움’으로 18.4%임. 다문화 관련 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한국사회적응 및 생활정착지원’으로 다중응답 전체 응답 중 22.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서비스는 ‘취업지원(취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19.3%임. 응답자의 55.0%가 미취업 상태인데,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0%로 높게 나타남.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문제가 가장 높았음.
-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특성화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관련 사업의 절대적 비중이 ‘언어’와 관련을 갖고 있음. 그렇다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매우 높은 수준임. 그러나 문제는 만족도가 높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여전히 언어소통의 문제로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임. 즉 언어소통의 문제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의 취약함으로 가정내 부분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취약함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문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욕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장애 요인으로 언어소통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이는 취업의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취업할지라도 직장 내 어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언어소통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를 지

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물론, 언어소통의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개별적 노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선제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험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언어지원에서 자국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관공서를 중심으로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공문서 양식 등 일종의 <한국어 plus> 프로그램을 도입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언어교육 방식 역시 현재와 같은 지원방식과 더불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단기 집중 교육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예컨대 농한기 시기에 지역대학생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집중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언어습득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Digital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 역시 시급히 필요함. 최근 들어 가족해체 직면한 가정들이 현재화되고 있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전예방과 함께 이혼 후 자녀들이 요보호 아동 상황에서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다문화가족의 경제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이민자 취업과 결부되어 있음. 일자리의 문제와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의 문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일자리 창출은 군 지역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에는 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민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임. 이 때 취업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음으로 취업장벽 해소를 위한 언어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취업 후 직장적응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그리고 홍보 및 자원연계가 기본사업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이 있음. 이상의 사업에 더하여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센터 조건에 맞는 소위,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임.
- 업무의 과도한 부담은 모든 센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임. 사업비 내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무자가 복수의 사업을 담당하는 상황을 ‘인력난’이라고까지 언급함.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1인 1사업 담당이 합당한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 없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이라고도 할 수 없음. 적정한 업무 가짓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러나 ‘인력난’을 언급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담당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지침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거점센터가 연계하여 매년 지침 해석 및 운영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민관 연찬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업별 인건비, 강사비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센터 사업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현실화되고 있음. 센터 근무자 간 인건비 책정 기준, 호봉 인정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센터 간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 이를 두고 소위 주무관 예산, 즉 담당 주무관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의 차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무관 예산임. 이 같은 근로조건 속에서 지역별, 센터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책 대상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에서 초기 정착 지원 중심에서 장기정착화를 위한 지원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 속도가 높지 않음. 특히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특히, 대학입시정책 및 진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한 후 본인들이 전문적이고, 고용안정적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따라서 식당의 주방보조 등 단순,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음. 전문적인 취업능력이 구비된다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한계와 노동시장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로 인하여 외부노동시장,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임.
- 다문화가정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함. 기존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형태의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임. 지역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은 자국민과 이민자 가정을 통합하여 “교육”이 아닌 “문화공유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나누는 활동 혹은 통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동일하게 모집하여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함.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이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구성,

아동의 성장에 따른 영유아 집중지원에서 중등 및 대학 입학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정책으로 변화, 다문화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아이들의 증가 등을 보면 장기정착화로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합당함. 그러나 이 같은 장기정착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궁극적 요인으로 언어소통의 문제, 앞서 본 연구는 이를 현실의 악순환의 고리가 명명했음. 이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한국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제1,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09, 12, 15, 18)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총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31만 6천가구(가구원 96만명)으로 전체 가구대비 1.6%(가구원 1.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에 따라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 거주지역은 경기(29%), 서울(22%), 인천(6%)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강원도 인구는 1,561,313명 중 외국인 등록인 수는 18,261명으로 도(道) 전체인구 대비 8.55%를 차지하고 있다(강원통계연보, 2019). 다문화 가구 수는 7,915가구이고 가구원 수는 26,922명이다. 도내 다문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대비 약 7.71%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다문화가구는 2.4%로 2015년 동일한 조사의 결과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2020.6.17. 뉴스 1 보도). 문화적·정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 이웃 간 잠재적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유형(한부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다문화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다문화가정폭력,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착의 장기화에 따른 또 하나의 변화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성장에 따른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영유아 자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

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장기 정책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즉 인식개선과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일회성 행사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일상에서 수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조의 변경에 따라 강원도 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역시 도내 물리적 환경, 다문화가족구성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초기 적응지원정책이 좀더 세밀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정착화에 따라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폭력과 다양한 다문화가족 유형 증가에 대응하도록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은 위에서 확인바와 같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다. 장기정착 중심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초기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 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 연장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획일적인 사업을 넘어 강원도의 지역적,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확인하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욕구에도 지원되지 않는 사업을 제안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와의 면담(FGI)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조사와 면접을 실시한다.

II.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그 동안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센터 종사자와 면담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 연구를 병행한다. 문헌 연구는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는 문헌과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실증조사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이용자의 이용실태조사와 센터장의 집중면담이 이루어진다. 실증조사는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 19(COVID-19)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 설문을 계획하였지만, 센터별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V 절 참조). 종사자(센터장) 면담은 집단면담과 함께 연구자가 방문하여 1:1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반구조화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III.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변화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렇듯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가족 내 한국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이거나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이 된다. 이 같은 개념의 문제는 새로운 양태의 다문화가족이 출현하고 있는데, 법적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법률의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다문화가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귀화자 1인 가구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한국인 결합된 가족이라는 다문화가족의 법 규정에 따라서 이들은 현행 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 및 별거하면서 자녀가 출생한국인 부 또는 모, 혹은 출생한국인 조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이 역시 현행 법 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9).

다문화가족지원대상 확대의 이상적 방법은 “이주이민을 배경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박복순 외, 2013. 송효진 외(2015)에서 재인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난민자녀에 대한 특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향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과 연구는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분산적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06년 법무처 차원의 [여성결혼이민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 시작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이 체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08년 법 제정 이후 [제1·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된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 첫 조사 이후 매 3년마다 2012년, 2015년, 2018년 네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고, 기초 통계자료 구축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총괄,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개선방안(2014),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방안(2014)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수립(2016) 등이 그 결과이다.

국민 다문화수용 조사연구(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 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다문화가족 내 성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참여확대를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2018) 등이 진행됐다.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욕구조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결혼이민 여성 가족의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강원발전연구원, 2010), 강원도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요구도 분석 및 건강수준 분석(강원발전연구원, 2014),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4) 등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적응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적 요구 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체류한 다문화 가구가 47.9%(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 문제를 경험(최윤정 외, 2017a: 66-68). 특히 다문화자녀들이 청소년 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도 긴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

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효능감이 낮았다.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으로 ‘본인이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26.9%), ‘자녀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 (26.3%) 등으로 나타남. 6세-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47.1%)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국 거주 부모·형제 관계에서 모국 가족의 초청 의향이 2018년 40.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46.9%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출신국가의 영향,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이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만, 그러나 외로움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이들은 3년간 5.6%p 증가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 미약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모임·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의향이 감소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외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30.9%로 다소 감소하였다. 차별 경험시 대처방법은 ‘참았다’가 절대적. 가족과 친구와 상의 24.7% 순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참가율 69.5%, 고용률은 66.4%로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고용률이 3.3%p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5%이다. 그러나 직종은 단순노무가 27.9%, 일반 국민의 13.0%보다 월등히 높았고 반면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7%, 사무직은 6.0%으로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서 직종에 필요한 전문적인 취업지원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월 평균 임금은 150-200만원 미만 25.3%, 100-150 미만 22.3%. 300만원 이상은 8.9%. 2015년과 비교할 때 150만원 미만 집단은 감소하고, 150만원 이상 집단은 증가하여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를 보면 한국어 및 한국사회적응 교육(51.8%), 임신출산 지원(45.5%),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44.0%), 일자리교육, 일자리 소개(3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은 주민센터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2015년과 비교하여 국적 취득 희망자는 증가하였으나 영주권 취득 의사 다소 감소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성을 분석해보면,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길고(일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어머니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10.5%로 일반 청소년의 1.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어머니와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일반인 초중고학생과 비교할 때 다문화가족 초중등생이 낮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구도를 보면, 한국어교육, 외국출신부모님 나라 언어나 문화교육 필요성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세~24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취업률은 18.6%로 일반 청소년(26.2%)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취업한 직종은 서비스 종사(25.7%)이고 판매종사자(15.8%). 종사상지위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전체 응답자의 67%. 월 평균 임금은 150만원 미만이 69.2%이다(여성가족부, 2018).

전북의 다문화가족을 한 단위로 묶어 전개하는 정책(one size fits all policy)보다는 정교한 시·군별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단기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의 거주기간이 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거주자 혼합되어 있고, 거주지역이 동부와 읍면부에 고르게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정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부장성이 강하고, 부부간 연령, 학력 차이가 크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가족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가족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갈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족의 위기와 해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향후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더불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빈곤 예방 및 소득보장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성장 정도에 따른 다양한 자녀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60% 이상은 미취학 아동이지만, 취학 자녀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자녀 등 자녀 성장별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와 취학 자녀의 증가는 지역의 인구구성 및 사회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은 전국과 비교하여 일상적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도 상당 수준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 활동이 출신국 네트워크에 기반해 있다. 한국인과의 교류는 학부모 모임 같은 특수한 목적이나 비일상적인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면에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사회주민과 자국 출신 다문화가족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정책 실행의 주요한 거점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센터의 지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고, 직원의 전문성, 업무처리 속도, 친근감 등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지역 유형별 중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강구. 도시형은 단기 체류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위한 지원. 도농복합형은 초기 정착형과 중기 적응형 가족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농촌형은 중기적응형 가족비율이 높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일반 가족의 자녀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아동청소년지원정책을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 2015).

수요집중지역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조선족 중도입국 자녀 중심지역에서, 청소년 카페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별, 집단 상담을 통하여 가족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사이버 아웃리치(cyber Outreach) 활동을 통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연계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지역 거주 중국 유학생 등)함을 강조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는 맞벌이가정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특화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과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초등 저학년은 한국어 학습, 교과지도, 중고등 단계에서는 교과목 지도와 진로설계 및 개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 등을 강조한다. 후기청소년 연령층과 니트(NEET) 상태의 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력 보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청소년활동시설이 협력하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서울시 경험 확인).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학교·교육청·다문화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기초상담부터 사례관리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영유아기 자녀지원은 부모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참여가 제한되고, 시기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가족프로그램 매뉴얼 확인).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강화,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소통 증진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위축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이선·정해숙·마경희·전경숙, 2016).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지원과 복지 법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지위와 신분 관련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민법(중도 입국 자녀의 입양 및 파양 시 적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같은 법률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착지원 중심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및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따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시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결혼이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자가 아닌 면접교섭권자인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

연재, 2015).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의 구성에서 중요한 변화는 국제결혼 이외에 귀화를 통한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귀화는 8.6%, 결혼이민이 4.1%이다(김이선·김영란·이해웅, 2016).

강원도 내 자원 부족 및 지역적 접근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강원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군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단계와 욕구 및 문제에 대한 지원 자원이 부족. 지역 내 복지기관의 다기능화를 추진을 제언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며 예산의 포괄사업비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한계성을 보완하자는 제안을 한다. 지역 내 복지기관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필요하다.

강원도 차원의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Wee센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팀, 기타 민간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한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시·군청 - 시·군교육청 - 읍면동 사업기관 - 학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확대. 가족구성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아버지 교육 의무화 추진(?)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인력의 역량강화와 처우 개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장은진, 2014).

IV. 외국의 다문화정책 변화와 대응: 미국과 캐나다¹⁾

1.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²⁾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이민 및 국적 취득에 관한 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52) 미국 입출국, 체류자격, 국적취득 법」이다. 주요한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방임 단계(The Laissez-Faire Phase, 1780 - 1875): 개척 시대에 광활한 땅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미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라면 환영한 단계이다. 이민자의 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는 매해 제한하는 이민자 수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으로 이민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들은 가족 우선 프로그램(Family Preference Program) 하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 매년 할당된 이민자 수의 범위 내에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적 선별 기준 단계(Phase of Qualitative Restrictions, 1875 - 1920): 정부가 정한 선별 기준에 따라 이민자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중국인 또는 저숙련 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이다.
- 양적 선별기준 단계(Phas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1921 - 현재): 출신국에 따라 쿼터를 정해서 이민을 허용,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 재결합과 근로자 우선 단계(Reunification, 1965 - 현재):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과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단계이다. 현재 미국의 이민법은 1965년 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1965)에 근거한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의 변화로, 주로 영국, 독일, 북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을 오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재결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 1) Fleras, A. (2009).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Govern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황혜성. “미국: 민권운동과 1965년 이민개혁법의 조우”, 박단 엮음.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사이에서,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김 욱 (2011). “주요 선진국가의 다문화정책방향비교분석: 한국에 주는정책적시 사점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음. 방문 홈페이지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 2)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타 인종, 종교, 정서, 문화 등이 후세에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 및 이민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따로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민을 통해 형성된 다민족 집단과 다양한 문화가 섞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자 혹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두고 있지 않다. Adelphi University 사회복지정책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여 확인하였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사회변화에 따라 재구성되어 왔다. 1965년 개정 이민법을 평가하는 이민과 난민 정책위원회(The Select Commission on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y)에서 법적 이민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만 서류 미비 이민자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의회는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US Commission on Immigration Reform, 1994). 그리고 1990년 통과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of 1990)은 취업 이민자에게 할당하는 쿼터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취업 이민에 있어서 우선순위별 쿼터를 분리한다. 이는 미국 이민법이 양적통제로부터 질적통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이민의 우선순위 제도(preference system)는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저숙련 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단기취업을 허가하는 H1-B비자도 연간 65,000명에서 수요 증가로 인해 195,000명까지 최대 확대되어 운영하는 등 국가 경제, 노동시장 및 기업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민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하다. 1995년 이민법 개정 위원회(the U.S. Commission on Immigration Reform)에서는 이민법의 핵심은 가족의 재결합과 숙련기술자의 이민을 강조하지만 부시행정부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가족단위의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이 미국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가족의 재결합 강조는 연쇄적인 이민을 초래하여 미국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취업에 기초한 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 system)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점수제 이민제도(point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 시기에 북반구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이민을 처음 채택하여 매년 1만명의 투자이민자의 비자를 허용하였으며, 고학력 소지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기회를 넓혔다. 이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본국 추방 등을 담고 있는 1996년 불법이민개혁및이민자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이 통과되면서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재입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1일 이상 불법체류자는 3년간 미국입국 금지이며, 6개월 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미국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시행 전에는 합법적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과 거의 동일한 공공복지 수혜 자격을 제공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 합법적 이민자들도 입국 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인 국민의료보조제도, 주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일시적빈곤가정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무료급식, 보충급여(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었다.

2001년 911사건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모국이 이슬람 국가인 체류자(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관리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였고, 2005년 국경 및 이민 강화법은 불법체류

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을 연방 차원의 범죄로 간주하였다. 2010년 애리조나주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주 정보 범죄로 규정하여, 이전에 불법 이민 단속을 연방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이후, 주 경찰의 검문과 체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 이민자에 대한 인권 차별이 심화될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 미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방향

미국의 초기 다문화정책은 <미국의 정신>을 주입하는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주민의 인종과 문화를 주류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통합시키는 융광로 정책을 펼쳤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인권 운동을 시작으로 주류사회의 문화존중을 기초하되 이주자 및 소수자들의 정체성 또한 인정하고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적 다원주의로 변모하였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다원주의는 공적 영역에서는 미국적 가치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를 강조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적응과 문화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포함하는 상호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행동과 노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은 이민자의 주류사회에 대한 통합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민과 귀화와 관련해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국적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과 정착에 관해서 지원영역은 크게 ① 이민자가 미국인으로서는 정체성 형성, ② 이민자를 돕는 공공 및 민간 기관 지원, ③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 및 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 가족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는 ④ 실태조사 ⑤ 언어 및 문화 교육, ⑥ 이민자 가족과 자녀의 빈곤 극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통합정책 중 하나는 언어교육이다. 이는 미국은 영어구사 능력과 이민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민자의 적응과 이민자 가정 자녀의 교육적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인 이민자에게는 성인기초교육법(Adult Basic Education Act)에 따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청, 지역사회대학교(community college), 종교 및 시민 단체 등에서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ESL 프로그램을 듣게 하며, 부시행정부 때는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하여 영어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영어학습 향상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학교에 부과하였다. 가정 내 부모의 영어교육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도 언어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Family Literacy Program과 Even Start Program이 있다.

이민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 또한 출신국 언어를 사용할 때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되고 이 때문에 교육 수준이 떨어지며 이는 빈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언어 교육 지원은 이민자의 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및 주정부는 이민 가정 자녀의 입학 전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학교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Prekindergarten program과 Head Start program이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다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숙제에 도움을 주거나 오락적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청소년 정서 발달이나 10대 임신 및 학대 예방에도 목표를 두고 운영된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3세 - 5세 저소득 계층 아동과 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Early Head Start program을 통해 3세 이하의 아동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 Migrant Head Start program은 이민 온 농장노동자 가족을 위해 설계되었는데,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6주 아동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연장 근무도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과 동화정책은 개인의 출신국, 민족 정체성 및 문화, 그리고 자아개념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자살, 우울, 이탈, 가족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 운동(Bilingual Education)이나 영어 전용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언어의 다양성을 갖자는 English Plus 운동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관공서나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영어 외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곳이 많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주에 따라 본인의 모국어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체제와 시스템에 적응을 도우면서 출신국 정체감을 유지하는 이중 문화 정체감(biculturality)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을 이민 정책의 새로운 안건으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방임주의 기초에 이민자의 초기 적응 지원에 초점을 두며, 동화정책이 기초이기는 하지만 출신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이자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중 정체감을 갖는 방향으로 이민자들의 적응과 어려움을 돕고 있다.

3. 미국의 다문화 · 이민 복지기관 프로그램

다문화 · 이민자 가정을 위한 복지 기관의 성격과 지원서비스가 주마다 비슷하여(언어교육, 취업 교육, 법률 지원, 아동 돌봄이, 노인 홈케어, 상담 서비스 등) 따로 기술 하지 않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진 몇 가지 기관들이다.

1) 코리안 복지센터(캘리포니아주)

한인 이민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이민자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1975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한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치료 및 예방의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랩어라운드 서비스(Wrap around Services)가 있다. 이는 주민발의안 63조에 의하여 오렌지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지원되는 풀 서비스 파트너십(FSP-Full Service Partnership)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랩어라운드 서비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정신 건강 서비스, 커뮤니티 정보 제공 및 이용 안내, 청소년과 부모 멘토링, 취업이나 교육, 교통편에 대한 지원과 주택 문제, 복지 혜택이나 음주 마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한인가정상담소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캘리포니아주)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LA에 설립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LA 카운티의 보호감찰국(Los Angeles County Probation Department)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국어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명령의 52주간의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은 분노나 감정 조절 방법, 갈등 조절 방법 등 다른 참석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에 관한 인식을 성숙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1,700명 이상의 한국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 1박 2일 수련회, 종교지도자 컨퍼런스, 종교 자문위원회 월례 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문제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3) Define American

디파인 아메리카는 2011년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2020년 가장 혁신적인 비영리 단체 10곳 중 한 곳으로 뽑힌 기관이다. 디파인 아메리카는 뉴스,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민자에 대한 올바른 여론 인식과 모든 인종들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문화적 변화를 추구한다. 다른 사

회복지기관처럼 클라이언트를 받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미디어 중심으로 인종차별, 혐오범죄,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 또는 범죄화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 소셜 네트워크 등의 제작 참여 또는 자체 제작을 통해 이민자 개인 또는 커뮤니티의 사회 활동/사회참여를 고무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디파인 아메리카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TV 프로그램 제작은 90개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Grey's Anatomy와 Superstore이 있다. 또, 23개의 미디어 플랫폼 Netflix, ABC, Disney+, NBC, WARNER BROS, MTV 등과 제휴하여 일하고 있다. 미디어 제작 외에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와 함께 공동연구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민자 캐릭터, 이민 이야기와 쓰이는 언어가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4.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변화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국가이다. 1969년 공용어법 제정하여 프랑스와 영어를 공용어 채택한 대표적 다문화 국가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자이크 다문화주의). 오늘날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초기 백인 집단에 의한 다양성 유지에서 전체 유색인종들의 평등 유지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 추진에는 영국계 중심의 캐나다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자치권 인정과 정치, 사회, 문화적 참여를 요구한 퀘벡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5년 다문화주의 프로그램 전담을 위한 ‘다문화주의 상임위원회’ 발족하여 다문화주의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있다. 고용 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1986)과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1988) 제정을 통해 국가적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한다.

1988년 다문화주의법 제정 (Multiculturalism Act): 문화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인정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시민적 다문화주의와 사법적 다문화주의 강조, 동화적인 방식이 아닌 통합적 방식, 문화 유지와 공유, 언어 보존 강조한다. 1991년 다문화주의와 시민부(Department of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기관 설치되어 제도화된 프로그램들이 개설하였다. 캐나다인들의 문화, 언어, 민족적 집단 정체성 공유하고 보존을 지원하는 문화유산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보장한다. 균등한 기회에 대한 제도적 변화, 긍정

적인 행동, 차별적 장벽 제거를 통한 사회경제적 통합 강조한다. 그러나 1993년 신설된 캐나다 문화 유산부로 통합되었다.

5.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당면과제

캐나다와 세계 속 다양한 문화 경험 공유하고 표현하는 캐나다인을 목표로 Canadian content 형성, 문화적 참여와 표현, 접근성 증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 민족 집단 간 상호 교류 촉진을 하위목표 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 간 이해와 시민 참여를 통한 통합적 캐나다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 간 이해 증진(문화적 장애 타파), 지역 및 공동체사회 참여 증진(전체 사회의 참여 장려)으로 구체화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가 사회 분열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킨다는 찬성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퀘벡주는 다문화주의가 프랑스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82년 수정헌법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법으로 명시하여 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어 헌법상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고용평등법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문제 중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간주하고 작업장 내의 차별 근절을 위한 법이다(국영기업체에 적용).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언어와 문화존중과 권리 증진 요구가 있어 보다 평등하고 확대된 시민 참여 모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6. 외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사점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주목되는 변화 경향으로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화를 지목할 수 있다. 즉 비슷한 이민 배경(인종, 언어, 국가)을 가진 사람이 새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관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 내 다문화·이민·난민 가정에 대한 인식 고취 또는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이민 가족들의 지역 내 소속감 형성과 고립감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과 지역 학교가 교육 파트너

십을 맺어 다문화·이민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제공한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어 주류 사회에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종교지도자와 함께하는 지지시스템의 강화 역시 주목되는 경향성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지도자 (목사, 집사, 등) 혹은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예: 가정폭력,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약물 중독 등).

마지막으로 이민·다문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구사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 강조한다는 것이다. 웨스턴 문화와 시스템 (미국/캐나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제는 이민자가정의 정착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언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EBS 방송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지역의 교육청,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실태 : 공급자 관점

1. 연구설계

본 절에서는 강원도 내 18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와 방문 및 면접을 통해서 현재 센터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 정부 정책의 실태와 한계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누어 거점 센터와 3개소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 면접하였다. 그리고 영서 지역 4개 지역의 센터장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2. 특화사업은 가능한가?: 예산의 제약과 실무자의 소진

민간기업 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사업만으로 이미 기존 센터의 업무가 과잉인 상태에서 가중된 업무로 인해 해당 사업 담당자와 그 외 직원들이 소진(burn out) 상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그리고 홍보 및 자원연계가 기본 사업이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이 있다. 이상의 사업에 더하여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센터 조건에 맞는 소위,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다이음사업은 정책사업이자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센터마다 3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합예산에서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예산 중 300만원 감소한 격이다. 즉, 절대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특정 사업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예산으로 변경된 것이다. 올해 예산이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이음사업으로 인해 역으로 마이너스 예산이 되었다. 요컨대,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화사업을 시행이 필요하다면, 사업이 가능한 형태의 예산, 즉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이음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는 활동이다. 센터별 연간 5개월 동안 활동하며 시간당 5만원(최대 2시간)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위의 사업비에 대한 언급은 다소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다. 사업비 300만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단지 사업 기간이 5개월로 한정되는 점과 강사료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대다수의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이 취약하고, 사업에 따라 상이한 인건비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여 인건비를 통합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사업마다 최종적인 인건비가 다르다. 즉, 특성화 사업, 상담, 사례관리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인건비 기준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센터 내에서 직원마다 인건비가 달라 직원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마다 기본 인건비 책정이 다르고, 세부 사업마다 책정하는 인건비가 다르다. 또한 호봉이 책정되는 업무가 있고, 가족수당,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 통상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통번역, 이중언어직은 예외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하는 업무일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한국어 점수 급수 이하가 되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퇴사하거나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

사례관리사의 경우도 호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양질의 사례관리사를 뽑지 못하고, 배치하지 못한 센터도 있다. 이 외에도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호봉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호봉을 다 채워줄 수 없다. 이 경우, 센터와 지자체별로 협의로 호봉 정리하고, 시·군·구의 예산에 맞춰, 인건비가 운영된다. 재정영역에 있어, 센터의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지침에는 따른다고 하지만 센터 예산이 여성가족부 소관이라서 인건비 자체가 다르고, 실제 시·군·구 협의 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 결과 센터가 소재한 지자체 별 예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시행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급하여 결국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사업별 인건비, 강사비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센터 사업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 근무자 간 인건비 책정 기준, 호봉 인정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 결혼이민자와 직원 간의 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센터 간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 이를 두고 소위 주무관 예산, 즉 담당 주무관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의 차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무관 예산이다. 이 같은 근로조건 속에서 지역별, 센터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업무 부담의 과부하 및 지자체별 운영의 차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본사업과 특화 사업만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이다. 각 영역별로 공통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필수 2개, 선택 10개 사업 구성되어 있고, “나” 형 센터의 경우, 기본 인력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기본 프로그램 ①가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② 성평등·인권: 가족내 성평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 ③ 사회통합: 취업지원, 자조 모임 등, ④ 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⑤ 홍보 및 자원 연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영역에서 세밀한 지침으로 센터 혹은 지역별로 융통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즉 지침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벅차서 별도 독립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업무 선정 및 임금책정 등의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부재한 실정이다. 시·군·구 담당자에 따라 혹은 해당 부서 담당자의 순환으로 인해 동일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지침을 해석과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시·군·구 담당자의 의견에 이견을 낼 수 없고, 지역 센터마다 동일 정부 사업이라도 사업비 운영과 인건비가 상이하게 운영된다. 그 결과 지자체별 연간 예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비 내 인건비 책정을 하지 않아서 실무자 1인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데 이를 ‘인력난’으로 표현한 센터장도 있었다.

업무의 과도한 부담은 모든 센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사업비 내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무자가 복수의 사업을 담당하는 상황을 ‘인력난’이라

고까지 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1인 1사업 담당이 합당한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 없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적절한 업무 가짓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난’을 언급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담당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지침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거점센터가 연계하여 매년 지침 해석 및 운영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민관 연찬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

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영유아 자녀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사업이 지침에 따라 정서 지원과와 생활가사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중복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초기 다문화가족정책에서 상기의 대상 선정이 적합하였을지라도 10년이 지난 현재, 과거 영유아였던 자녀들은 청소년으로 성장하였고, 청년인 된 자녀가 중도 입국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도 입국한 자녀의 경우, 모국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국적 또한 스스로 취득해야 한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국적의 문제, 언어 및 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자녀 문제와 더불어 결혼 이주여성과 다른 지위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서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지원문제 현실화되고 있는 데 법적 지위 및 비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원이 부족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의 교육과 입시 및 취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국민만큼 진학과 진로에 대한 정보가 빠르지 못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이 된 자녀에게 적합한 진로지도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실 반영한 구체적인 대학입시 지도가 필요하고, 정서 및 방문학습 지도의 경우도 아동 및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여 중·고등학생까지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서비스가 시급한 이들 즉, 중·고등학생, 중도입국자녀는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방과후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서비스인 정서지도나 학습지도 영역은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놓여있고, 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상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초기 정착 지원 중심에서 장기정착화를 위한 지원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 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정책(특히, 대학입시정책 및 진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중고생)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사업을 센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등 전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지원하는 형식이 적절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생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당면 과제 중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역시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 및 사회 적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에 체계적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을 이주여성이 아닌 ‘가족’으로 확대 필요가 있다. 기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히려 이주여성이 타겟팅화되며, 이주여성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설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로 낮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대상자의 확대와 시간대의 확대 및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사업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결혼이민자가정의 조기 정착화를 지원하고,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과 특화사업 등이 결혼이민자 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이 배제되어 운영되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 기본사업 중 ‘가족’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향상, 아버지 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들의 참여는 필수 전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센터장들의 의견은 가족구성원들이 사업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혹은 가족구성원의 소극적 참여가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취업 및 직업교육의 문제

취업은 이주여성에게 중요한 경제적 욕구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직업능력, 인적자본수준을 고려한 일자리가 제한적이다. 대개의 이주여성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지만 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센터에서는 현재 사회통합 사업

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업기초 소양교육, 근로의욕 고취 등을 사례관리 일환으로 강화·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한 후 본인들이 전문적이고, 고용안정적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식당의 주방보조 등 단순, 불안정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취업능력이 구비된다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한계와 노동시장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로 인하여 외부노동시장,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면허증 등 준비반을 운영하고, 취업관련 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직업 중 1명을 반드시 취업지원 담당자로 지원하는 등의 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를 향한 길 찾기’ 등의 세부사업과 추진방법 등이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경험에 기반하며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본국의 요리에 기반하여 식당을 창업하거나 본국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이 특화되는 취·창업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일부이지만 이주여성을 상대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예, 초중고생을 상대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센터가 있다.

6. 이혼증가와 인권침해 그리고 센터대응의 한계

다문화가족의 이혼문제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주로 이혼 사유는 결혼 전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른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상황이었다. 배우자 나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나, 저소득층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배우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알코올 문제 혹은 질병을 겪고 있는 등 알지 못했던 문제를 입국 후 알게 된 것들이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의 사망 후 혹은 예기치 못한 사별, 국적 취득 후 이혼과 더불어 자국민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문제, 친자 확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아내에 대한 폭력, 학대와 무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경우, 대다수 이주여성이 본인에 대한 학대보다는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적을 취득 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지만, 국적 미취득 상황에서는 이혼 후 불이익이 예상되어 위기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개입 및 사정(assessment)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상담사 및 전문상담사가 부재한 센터가 많아 대부분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직접 개입한 사례보다는 통·번역사의 기록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사례가 많다. 결혼이민자의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통·번역사의 기록지를 검토하는 중 이혼의 여지를 직감하고 이주여성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한 후, 상담을 통해 이혼을 재고하거나 혹은 법원에 동행하는 등 이혼 과정에 적극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통·번역서비스 업무는 매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통·번역업무 기록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별업무보고서를 센터장이 결재하는 업무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주별 1회 업무기록지를 확인하여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기개입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이 서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상담전문직의 확보 및 확대 그리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7. 자국민 네트워크 형성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영역은 크게 이민자 집단 내부 즉, 자국민 모임과 외부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는 대표적인 집단 내 영역인 자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국민 네트워크는 사회참여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형성되고, 동일 국가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는 초기 정착시 언어의 이질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경험하는 언어의 문제없이 기존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비슷한 경험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들만이 위로와 고국에 대한 향수를 극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거의 순기능과 다른 또 다른 양상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위로받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현재는 오랜 한국 생활의 경험으로 혼인상태, 가족의 형태 혹은 빈부의 격차 등에서 자조모임 내 장벽(소수의 모임)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혹은 박탈감으로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에 따른 따돌림도 목격되고 있다.

자조모임은 기 정착 다문화가족이 신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을 지원하여 정서적 유대감 형성 및 조기정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결혼 이민자 간 정보교류를 통해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잠재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도 한다. 자조모임의 유형 예시에 따르면, 대상자의 특성별(국적, 국가별 등)과 주제별(취업·창업, 취미·여가 등)로 구성할 수 있고, 소수 국적 출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자조모임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소수의 자조모임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조모임의 운영 목적과 달리 자조모임이 유대감 형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정보 교류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측면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조모임 간 통합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자조모임의 취지를 공유하여 순기능과 효과를 제고해야할 것이다.

8.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 시설 확충,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즉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郡) 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거나, 거주지 이전 경험없는 토착 고령인구가 많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여 결혼이주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이로 인해 이주여성 및 그들 자녀에게 대한 배타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두드러짐으로 인해 이들 가정이 대도시보다 정착이 불리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형태의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실제 인식개선 교육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고, 정착 발상의 전환 혹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센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라도

고령층의 정보접근성과 확보가 낮기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은 자국민과 이민자 가정을 통합하여 ‘교육’이 아닌 ‘문화공유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나누는 활동 혹은 통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동일하게 모집하여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교육이 아닌 일상의 공유, 모듬활동을 통한 체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주시에서 매년 다문화음식나눔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단회적 목적성 프로그램이지만, 막연한 교육보다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높일 수 있다.

센터사업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으로 대별·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반가족의 선정 비율보다 다문화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향후 센터사업은 가족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통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 결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예산과 공모사업이 확충되어야 한다.

센터사업의 방향과 내용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으로 분리하여 사업보다는 통합 운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통합 교육과 사업이 사회적 수용도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요건으로서 통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모 사업 등에서 통합 교육에 가점하는 방식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거점센터의 역할 재정립 문제

거점센터는 지자체 맞춤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시설이다. 거점센터는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직원 교육 실시,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센터 운영지원 및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거점센터 정기 회의 등), 권역 내 센터·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주요 기능과 업무로 하고 있다.

거점센터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운영주체는 시·군·구 위탁 또는 직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될 수 있고, 시·도 광역센터가 수탁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연 단위로 5년 이내 위탁할 수 있다. 거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실적이 우수하여 사업역량을 인정받는 센터,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이어야 한다. 전담인력은 센터 직원(팀장, 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이다.

거점센터에 부여된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점센터의 지침상의 역할 수행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지역센터의 자료협조 의무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거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 지침상 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점센터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거점센터는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이어야 하는 데 속초센터가 적절한 지역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센터의 물리적 이전으로 센터 소속 직원들이 근무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 있으며, 차후 위탁센터가 변경될 경우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차제의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에 위탁한다는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 거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최근 이주여성의 정신질환, 대표적인 질환으로 우울증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모국에서는 정신 질환 여부가 판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판정된 정신 질환을 본인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신상담 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국에서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만 자국의 질병 기준과 분류가 우리나라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아동에서 발견되는 문제로 언어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학습지원 등을 하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언어치료사가 있지만, 언어치료를 하다 보니 발견되는 난제가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에 있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치료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자부담과 다수의 대기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센터에 전담 치료지원인력이 미비하고, 인건비 지원 미흡한 실정이다.

VI.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 분석 : 이용자 관점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태 및 욕구 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와 서비스 실태 및 욕구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은 현재 강원도 내 18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자녀양육,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수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방식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방문교사 및 이중언어교사의 방문을 병행하였다.

2.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은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강원도 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인 총 38,504명이며(남성 18,844명, 여성 19,660명), 이 가운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는 17,420명으로 설문조사의 모집단이다. 강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1개 센터당 평균 968명이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 강릉시의 경우 2,591명인 반면, 화천군의 경우 52명에 불과하고, 지역별 특성, 연구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상자수를 2020년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376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수준)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동년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76부를 배포하여, 약 40%인 151부를 회수하였고, 응답 내용이 오염되었거나 미기재 및 훼손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148부이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으로 코로나 19(COVID-19)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언어의 한계, 접근성의 한계 등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온라인 방식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대인면접을 활용하였다³⁾. 설문내용은 가구특성,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자녀양육, 삶의

만족도, 사회생활 등 실태분석과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민족조사 등 욕구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수준과 한계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 및 욕구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의 접근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조사내용의 구성 및 분석방법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진행하되, 기존 문헌고찰과 현행 강원도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조사도구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경제활동 등은 기존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하였고,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사회생활 내 사회자본 수준, 기타 문항은 강원도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심층면접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하여, 주요 면접 내용은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총 6개의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회의 과정 중 새로 발견되는 문제와 현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정책 만족도 및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한 빈도, 다중반응(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구성체계

구분	내용	문항수	척도
기본사항 및 가정생활	■ 개인특성 ■ 가구특성 ■ 배우자특성 ■ 본인특성	31개	서열 명목 등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수준	■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 ■ 현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	9개	명목 등간

3) 지역별로 온라인 환경의 차이와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시 접근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제한점이다.

	■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 선호 프로그램 및 비용 ■ 추가 지원 서비스		
자녀양육 및 돌봄 영역	■ 자녀특성 ■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수준 ■ 자녀와의 관계 ■ 미취학 자녀 및 취학 자녀에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 ■ 자녀양육 어려움	6개	서열 명목 등간
학습 및 교육 영역	■ 한국어 수준 ■ 학습(교육)의 여부 ■ 학습(교육)의 어려움	4개	명목 등간
취업 및 경제 영역	■ 경제활동 유무 ■ 경제활동 만족도 ■ 노동의 어려움 ■ 구직활동 관련 ■ 지역 또는 조직(직장) 내의 사회자본 수준	10개	명목 비율
공동체 및 사회참여 영역	■ 모임 또는 활동 경험 및 선호, 어려움 ■ 차별 경험 및 대응 ■ 강원도 생활 만족도 ■ 강원도 거주 의사	7개	서열 명목 비율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기본사항 및 가정생활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를 고찰해보면, 먼저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사대상자의 성비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통한 다문화가정 구성이 한국의 다문화가구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는 여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30대 48.9%(68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5.9%(36명) 40대 18.7%(26명), 50대 이상 6.5%순으로 참여하였다. 출생국가는 베트남 48.3%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중국 19%, 캄보디아 17.7%, 태국 4.8%, 일본 2.0%, 대만, 우즈베키스탄 각각 0.7%로 분포되어있다.

학력수준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 참여자의 36.4%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로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원 재학, 수료 및 재학’은 4.9%, ‘기타’ 4.2%,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 ‘무학’ 0.7%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은 54.4%가 취득하였고, 45.6%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연도는 2010년대가 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년대 31.1%, 2020년대 9.1%, 1990년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 ~ 2019년까지 입국한 이주여성이 많다는 것은 이들이 출산한 자녀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척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일반적 특성(개인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N=148)	여성	145	98.0	출생국가 (N=147)	중국	26	17.7
	결측	3	2.0		베트남	71	48.3
연령대 (N=139)	20대	36	25.9		필리핀	28	19.0
	30대	68	48.9		일본	3	2.0
	40대	26	18.7		대만	1	0.7
	50대 이상	9	6.5		캄보디아	7	4.8
학력수준 (N=143)	무학	1	0.7		태국	6	4.1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2.1		우즈베키스탄	1	0.7
	중학교 졸업 이하	28	19.6		카자흐스탄	4	2.7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	32.2	국적취득 (N=136)	미취득	62	45.6
	전문대/대학교 졸업 이하	52	36.4		취득	74	54.4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7	4.9	입국연도 (N=132)	1990년대	6	4.5
	기타	6	4.2		2000년대	41	31.1
					2010년대	73	55.3
					2020년대	12	9.1

일반적 특성 중 가구특성과 관련된 설문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자에 대한 현재 혼인 및 동거 상태를 살펴보면, ‘결혼’ 이 85.4%, ‘이혼’ 이 6.9%, ‘재혼’ 이 4.2%, ‘기타’ 및 ‘사별’ 은 각각 2.1%, 1.4%이다. 혼인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39.4%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 10년 미만’ , ‘3년 이하’ 가 각각 23.5%, 22.7%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3년 초과 5년 미만’ 이 14.4%이다.

맞벌이 여부 대한 응답으로 ‘외벌이’ 가 56.7%, ‘맞벌이’ 가 38.8%로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많았고, ‘기타’ 응답으로 2.1%이다. 이 중 1명이 수급자로 응답하였다. 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으로 질문하지 않고, 구체적인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진행하였다. 월 20만원부터 월 600만원까지 다양한 응답이 있었고, 평균 월소득은 약 296만원이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질문인 ‘동거 가족구성’ 에 대한 응답자 중 ‘배우자’ 를 포함한 가족구성이 43.8%로 가장 많았고, ‘자녀’ 를 포함한 가족구성이 41.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부모’ 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10.1%, ‘형제자매’ 와 함께 사는 가구가 0.7%, ‘기타’ 0.4%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 로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혼 및 별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3가지 원인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도 등 애정문제’ 가 19.1%, ‘성

격차이' 18.0%,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 18.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및 가족과의 갈등' 이 14.6%, '경제적 문제' 11.2%, '기타' 7.9%, '자녀문제',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 이 5.6%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응답으로 '간섭'이 있었다. 이혼 및 별거 후 자녀양육은 '본인'에 대한 응답이 51.9%로 있었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5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난다'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특성(가구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복수응답 %
혼인 상태 (N=144)	결혼	123	85.4	이혼 별거 사유 (N=89)	외도 등 애정문제	17	19.1	34.0
	재혼	6	4.2		성격차이	16	18.0	32.0
	이혼	10	6.9		배우자 및 가족과의 갈등	13	14.6	26.0
	사별	2	1.4		경제적 문제	10	11.2	20.0
	기타	3	2.1		자녀문제	5	5.6	10.0
	전체	144	100.0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	16	18.0	32.0
혼인 (동거) 기간 (N=132)	3년 미만	30	22.7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	5	5.6	10.0
	3-5년 미만	19	14.4		기타	7	7.9	14.0
	5-10년 미만	31	23.5		전체	89	100.0	178.0
	10년 이상	52	39.4	동거 가족 (N=276)	배우자	121	43.8	88.3
	전체	132	100.0		자녀	115	41.7	83.9
맞벌이 (N=134)	외벌이	76	56.7		시부모	28	10.1	20.4
	맞벌이	52	38.8		친정부모	9	3.3	6.6
	기타	6	4.5		형제자매	2	0.7	1.5
월소득 (N=83)	평균	표준편차			기타	1	0.4	0.7
	296.30	157.060			전체	276	100.0	201.5

[표 3], [표 4] 및 [표 5]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여러 가족들과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후, 배우자와

의 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문항으로 구성된 관계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문 응답자가 인식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 수준은 ‘본인의 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척’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다소 높은 반면, ‘배우자의 부모’와 ‘기타 동거 중인 가족들’에게 느끼는 관계 만족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응답이 ‘매우 만족’과 ‘보통’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본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에 편중되어 있다. 6가지의 가족 구성원을 각각 5점 척도로 전반적인 가족 만족도를 분석하면, 4.0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질문 문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평균	SD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배우자	11	7.6	8	5.5	38	26.2	31	21.4	57	39.3	3.79	1.235
배우자의 부모	6	4.8	13	10.4	35	28.0	23	18.4	48	38.4	3.75	1.209
배우자의 친척	2	1.5	6	4.5	49	37.1	33	25.0	42	31.8	3.81	0.990
본인의 부모	1	0.8	1	0.8	18	14.4	28	22.4	77	61.6	4.43	0.826
자녀	2	1.7	2	1.7	12	9.9	29	24.0	76	62.8	4.45	0.866
기타 동거 중인 가족	3	4.2	3	4.2	29	40.3	14	19.4	23	31.9	3.71	1.093
가족만족도(N=146)											4.02	0.865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아내)은 내 여가생활을 지지해 준다.’에 대해 39.0%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문항의 평균값이 3.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 고민에 대해 남편(아내)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33.6%였으며, 평균값은 3.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로부터 여가생활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반면, 대화 및 공감을 통한 정서적 지지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남편(아내)은 나의 일에 관심갖고 걱정해준다.’ 문항과 ‘남편(아내)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3.82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보인다. 또한 ‘남편(아내)으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문항의 평균값은 3.79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전체 평균값은 3.79점으로 ‘보통’ 과 ‘그렇다’ 수준 사이에 있다. 앞서 이혼 및 별거의 사유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배우자와의 소통의 문제가 결국 가족유지 또는 가족해체에서 중요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영향력은 별도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표 5]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

배우자와의 관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남편(아내)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6	4.3	6	4.3	45	31.9	34	24.1	50	35.5	3.82	1.097
남편(아내)으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6	4.3	11	7.9	39	27.9	35	25.0	49	35.0	3.79	1.137
남편(아내)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	7	5.0	6	4.3	42	29.8	37	26.2	49	34.8	3.82	1.112
내 고민에 대해 남편(아내)과 이야기할 수 있다.	6	4.3	10	7.1	47	33.6	31	22.1	46	32.9	3.72	1.126
남편(아내)은 내 여가생활을 지지해준다.	6	4.3	7	5.0	44	31.2	29	20.6	55	39.0	3.85	1.127
배우자만족도(N=142)											3.79	1.016

[표 6]은 설문 대상자가 평소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의 차이 수준을 확인한 결과이다. 문화차이의 인식은 총 9영역으로 확인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을 때는 ‘보통이다’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평균값을 측정하였을 때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영역은 ‘음식 등 식생활’로 2.88점이다.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2.83점,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2.82점,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2.80점, ‘가사분담 방식’ 2.78점, ‘자녀 양육 방식’ 및 ‘부모 부양방식의 차이’가 2.66점으로 동일하고, ‘의복 등 옷 입는 습관’과 ‘종교생활’가 각각 2.51점, 2.41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전체 평균값은 2.73점으로 ‘가끔 있다’와 ‘보통’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적 차이 인식도는 결혼이민자

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6]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도

질문 문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평균	SD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음식 등 식생활	14	9.8	42	29.4	49	34.3	23	16.1	15	10.5	2.88	1.123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35	24.6	20	14.1	69	48.6	16	11.3	2	1.4	2.51	1.030
자녀 양육 방식	25	18.2	40	29.2	41	29.9	18	13.1	13	9.5	2.66	1.196
가사분담 방식	27	19.6	18	13.0	65	47.1	15	10.9	13	9.4	2.78	1.165
부모부양방식	29	22.0	16	12.1	67	50.8	11	8.3	9	6.8	2.66	1.118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22	16.2	20	14.7	63	46.3	22	16.2	9	6.6	2.82	1.095
종교생활	44	33.6	14	10.7	53	40.5	15	11.5	5	3.8	2.41	1.176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23	16.9	23	16.9	61	44.9	16	11.8	13	9.6	2.80	1.147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20	14.6	33	24.1	51	37.2	16	11.7	17	12.4	2.83	1.192
문화적 차이(N=145)											2.73	0.863

[표 7]은 설문대상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본 것으로, 해당 분석은 다중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18.4%가 선택하였으며, 언어의 문제로 인해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16.3%, ‘취업 및 구직의 어려움’ 14.5%,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11.3%, ‘고독함/외로움’ 9.6%, ‘사회적 관계/대인관계의 어려움’, ‘문화와 관습의 차이’ 6.0%으로 동일하고, ‘어려움 없음’ 5.7%, ‘부부/가족 간의 갈등’ 4.6%, ‘차별과 편견’ 3.9%,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이용의 어려움’ 2.8%,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수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은 여타의 질문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반면, 언어 문제로 인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은 체류국가의 언어가 타국에서 결혼이민자로서의 지위로 삶을 영위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건임을 감안

하여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한국생활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어려움 없음	16	5.70	11.10
고독함/외로움	27	9.60	18.80
경제적 어려움	46	16.30	31.90
취업/구직의 어려움	41	14.50	28.50
부부/가족 간의 갈등	13	4.60	9.00
사회적 관계/대인관계의 어려움	17	6.00	11.80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52	18.40	36.10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32	11.30	22.20
문화와 관습의 차이	17	6.00	11.80
차별과 편견	11	3.90	7.60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이용의 어려움	8	2.80	5.60
기타	2	0.70	1.40
전체	282	100.0	195.80

삶의 만족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 8]와 같이 ‘보통이다’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인식을 세부 문항에 걸쳐 살펴보면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문항의 평균값이 3.3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내 인생은 내가 꿈꿔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항의 평균값이 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3.2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을 성취해 왔다’ 3.1점의 순이다.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자들의 전체 삶의 만족도 평균은 3.18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표 8] 삶의 만족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내 인생은 내가 꿈꿔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13	8.9	25	17.1	66	45.2	32	21.9	10	6.8	3.01	1.014
나의 생활여건들은 아주 좋은 편이다.	5	3.4	14	9.5	81	55.1	35	23.8	12	8.2	3.24	0.86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9	6.2	12	8.2	63	43.2	46	31.5	16	11	3.33	0.99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성취해왔다.	11	7.5	23	15.6	62	42.2	38	25.9	13	8.8	3.13	1.029
만약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0	6.9	23	16	52	36.1	42	29.2	17	11.8	3.23	1.076
삶의 만족도(N=148)											3.18	0.858

2)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수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이용여부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 78.9%, ‘한국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77.5%로 언어교육 및 한국 적응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이 높았다. 반면, ‘아이돌보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34.1%, ‘도서관(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39.8%로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

만족수준은 모든 서비스에서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만족도를 보이지만, 그 중 ‘한국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4.4점,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의 만족도가 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 절의 한국어 관련 어려움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언어 소통 장애 문제를 해소해 주는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의 문제인지 혹은 정보제공의 미흡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표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별 경험 및 만족도

질문 문항	구분	경험 유무		만족 수준					평균	SD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	빈도	79	23	2	0	15	35	60	4.3	0.846
	%	77.5	22.5	1.8	0	13.4	31.3	53.6		
한국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빈도	75	20	0	0	11	45	50	4.4	0.667
	%	78.9	21.1	0.0	0.0	10.4	42.5	47.2		
번역 서비스 지원	빈도	48	47	0	0	13	33	35	4.3	0.725
	%	50.5	49.5	0.0	0.0	16.0	40.7	43.2		
임신·출산 지원	빈도	48	45	1	0	13	34	33	4.2	0.802
	%	51.6	48.4	1.2	0.0	16.0	42.0	40.7		
부모교육	빈도	41	53	0	1	17	27	32	4.2	0.818
	%	43.2	55.8	0.0	1.3	22.1	35.1	41.6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빈도	44	49	0	1	14	28	32	4.2	0.793
	%	46.8	52.1	0.0	1.3	18.7	37.3	42.7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빈도	51	41	0	1	16	28	36	4.2	0.806
	%	55.4	44.6	0.0	1.2	19.8	34.6	44.4		
사회 활동 지원 (자조모임 등)	빈도	51	42	1	2	17	33	31	4.1	0.881
	%	54.8	45.2	1.2	2.4	20.2	39.3	36.9		
각종 상담 (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 상담 등)	빈도	42	53	0	0	15	24	32	4.2	0.783
	%	43.8	55.2	0.0	0.0	21.1	33.8	45.1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빈도	41	54	0	1	13	22	31	4.2	0.818
	%	43.2	56.8	0.0	1.5	19.4	32.8	46.3		
아이돌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빈도	31	60	0	1	13	18	30	4.2	0.843
	%	34.1	65.9	0.0	1.6	21.0	29.0	48.4		
도서관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빈도	35	53	0	1	13	23	31	4.2	0.813
	%	39.8	60.2	0.0	1.5	19.1	33.8	45.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미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 [표 10]와 같다. 먼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응답자 3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32.3%, ‘신청방법을 몰라서’ 31명 18.6%, ‘받을 필요가 없어서’ 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 ‘한국에 왔을 때 지원 자체가 없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

[표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미사용 사유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56	33.5	52.8
시간이 없어서	54	32.3	50.9
가족이 반대해서	1	0.6	0.9
신청방법을 몰라서	31	18.6	29.2
받을 필요가 없어서	13	7.8	12.3
기타	12	7.2	11.3
전체	167	100.0	157.5

[표 11]은 설문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보여준다.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형태는 ‘관람형 및 현장견학형’ 으로 32.7%이다. 다음으로 체험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및 대화형(동아리, 멘토링, 소집단 등)’ 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1.3%, ‘캠프형’ 을 선택한 조사대상자는 16.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연형(체험)’ 12.9%이며, ‘강의형 및 강연형’ 8.0%,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 5.3%,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녹화 방식’ 1.9%, ‘기타’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적당한 캠프 기간에 대한 응답으로 ‘1박 2일’ 이 많았다.

[표 11] 선호프로그램 유형

	N	퍼센트	복수응답
강의형 및 강연형	21	8.0	15.6
상호작용 및 대화형(동아리, 멘토링, 소집단 등)	56	21.3	41.5
관람형 및 현장견학형	86	32.7	63.7
실연형(체험)	34	12.9	25.2
캠프형	44	16.7	32.6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	14	5.3	10.4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 녹화 방식	5	1.9	3.7
기타	3	1.1	2.2
전체	263	100.0	194.8

설문대상자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어려움 혹은 불만족의 구체적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의사소통 문제, 정보전달 문제 등)’ 이 21.9%로 가장 높았다. 언어 관련 문제는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움’ 으로 18.4%가 선택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산간 내륙지방 등 중·소도시를 포괄하는 등의 이유로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함’, ‘서비스가 실제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에 부족함(충분성, 연속성)’ 10.9%, ‘기타’ 10.4%, ‘결혼이주여성(남성)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 10.0%, ‘결혼이주여성(남성)이 처한 생활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함’ 8.0%, ‘서비스 홍보 부족’ 5.5%,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강사 및 강의내용과 수준 등)’ 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요인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결혼이주여성(남성)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	20	10.0	16.8
결혼이주여성(남성)이 처한 생활환경(생활조건)을 잘 반영하지 못함	16	8.0	13.4
서비스제공 기관으로의 접근(교통)이 어려움	37	18.4	31.1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함	22	10.9	18.5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의사소통문제, 정보전달문제 등)	44	21.9	37.0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예: 강사 및 강의내용과 수준 등)	8	4.0	6.7
서비스 홍보부족	11	5.5	9.2
서비스가 실제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에 부족함 (충분성, 연속성)	22	10.9	18.5
기타	21	10.4	17.6
전체	201	100.0	168.9

설문대상자들이 가장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원하는 다문화 서비스는 ‘한국사회적응 및 생활정착지원’ 으로 다중 응답 전체 응답 중 22.3%에 해당하는 61명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서비스는 ‘취업지원(취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19.3%이고,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 국민연금, 긴급복지, 한부모지원 등)’, ‘교육지원(검정고시·정규교육지원 등)’ 지원으로 각각 10.6%, 9.1%이다. ‘심리·정서지원(개인상담/가족상담)’ 21명(7.7%), ‘체류 및 국적취득지원’ 7.3%로 유사한 수준이다. 이 외에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교육)지원’ 6.2%, ‘가족단위 프로그램’ 5.8%, ‘의료지원’ 5.1%, ‘사회참여·공동체활동 지원’, ‘다문화 인식 제고(캠페인, 축제, 교육 등)’ 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남편교육’ 이 있었다.

[표 13]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한국사회적응 및 생활정착지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61	22.3	43.0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 국민연금, 긴급복지, 한부모지원 등)	29	10.6	20.4
체류 및 국적취득지원	20	7.3	14.1
의료지원	14	5.1	9.9
심리·정서지원(개인상담/가족상담)	21	7.7	14.8
임산·출산 및 자녀양육(교육)지원	17	6.2	12.0
취업지원(취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53	19.3	37.3
교육지원(검정고시·정규교육지원 등)	25	9.1	17.6
사회참여·공동체활동 지원	9	3.3	6.3
가족단위 프로그램	16	5.8	11.3
다문화 인식 제고(캠페인, 축제, 교육 등)	9	3.3	6.3
전체	274	100.0	193.0

3) 자녀양육 및 돌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설문대상자들의 자녀 발달주기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35.3%가 ‘영·유아기 아동’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아동기’ 30.2%, ‘청소년기’ 27.3%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성인기’로 응답한 대상자는 10명으로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아동이 많은 것은 다중응답에 대한 결과로 첫째 자녀 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지적인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표 14] 자녀의 발달주기

구분	전체		자녀있음		복수응답 %
	N	퍼센트	N	퍼센트	
자녀없음	10	6.7	-	-	7.9
영유아기	49	32.9	49	35.3	38.6
아동기	42	28.2	42	30.2	33.1
청소년기	38	25.5	38	27.3	29.9
성인기	10	6.7	10	7.2	7.9
전체	149	100.0	139	100.0	117.3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3.88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매우 그렇다’가 59명(46.1%)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4.28점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15]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수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빈도	2	3	46	52	25	3.74	0.853
	%	1.6	2.3	35.9	40.6	19.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빈도	0	4	55	42	27	3.72	0.832
	%	0	3.1	43.0	32.8	21.1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빈도	0	5	36	52	35	3.91	0.842
	%	0	3.9	28.1	40.6	27.3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빈도	0	1	21	47	59	4.28	0.763
	%	0	0.8	16.4	36.7	46.1		
부모교육	빈도	1	2	47	38	32	3.82	0.879
	%	0.8	1.7	39.2	31.7	26.7		
전체							3.88	0.713

다음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된 항목으로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질문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응답결과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2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차이’ 17.0%, ‘경제적인 어려움’ 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만 5세 미만 자녀 양육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차이	28	17.0	30.4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47	28.5	51.1
체력적인 어려움	12	7.3	13.0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14	8.5	15.2
경제적인 어려움	25	15.2	27.2
편견 또는 차별	15	9.1	16.3
어려움없음	16	9.7	17.4
기타	8	4.8	8.7
전체	165	100.0	179.3

한편, 만 5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1순위는 ‘자녀에게 드는 비용부담’으로 17.6%가 응답하였다. 2순위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직장에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의 갈등)’으로 14.5%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녀와의 대화부족’ 10.9%, ‘가사일/돌봄역할의 부담’ 9.7%, ‘자녀와의 갈등(학업, 친구관계, 비행, 게임, 스마트폰 등)’ 8.5% 등 다양한 요인에서 유사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17] 만 5세 이상 자녀 양육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해당없음	17	10.3	18.3
자녀에게 드는 비용부담	29	17.6	31.2
가사일/돌봄역할의 부담	16	9.7	17.2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의 갈등)	24	14.5	25.8
자녀와의 대화부족(의사소통 방법 등)	18	10.9	19.4
자녀와의 갈등 (학업, 친구관계, 비행, 게임, 스마트폰 등)	14	8.5	15.1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양육방식 갈등	9	5.5	9.7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12	7.3	12.9
학부모활동, 교사상담 등의 어려움	7	4.2	7.5
자녀양육 및 돌봄에 필요한 공적 지원의 부족 (학업, 진학, 진로 등 정보제공, 양육 서비스제공 등)	12	7.3	12.9
차별과 편견	5	3.0	5.4
기타	2	1.2	2.2
전체	165	100.0	177.4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 영역의 1순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감성코칭교육’으로 응답자의 17.4%로 42명이었고, 2순위가 ‘자녀의 학습 및 진로교육’으로 17.1%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이중언어교육’ 15.4%, ‘양육과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비스’ 13.3%,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11.6%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자녀의 ‘성교육’이 각각 7.1%, 6.2%가 응답하였다. 이는 자녀연령과 관련된 것으로 영·유아 아동 및 사춘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8] 자녀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해당없음	5	2.1	4.0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감성코칭교육'	42	17.4	33.6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17	7.1	13.6
자녀의 '성교육'	15	6.2	12.0
자녀의 '학습 및 진로교육'	41	17.0	32.8
자녀의 언어발달, 이중언어교육	37	15.4	29.6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28	11.6	22.4
양육과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비스	32	13.3	25.6
같은 또래 자녀를 둔 '부모모임'	11	4.6	8.8
양육/자녀와의 갈등 관련 '상담(가족상담) 서비스'	13	5.4	10.4
전체	241	100.0	192.8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 19]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대처방법은 '가족자원활용'으로 설문대상자 중 37.8%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적 자원으로 '친구, 이웃, 친척 등의 사적 자원 활용', '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하는 경우는 15.5%가 해당하며,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 공적서비스의 영역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이용'과 '지역아동센터이용'은 각각 12.4%, 7.3%인 반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이용'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자녀 돌봄 대처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가족자원을 활용한다	73	37.8	63.5
친구, 이웃, 친척 등의 사적 자원을 활용한다	30	15.5	26.1
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30	15.5	26.1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24	12.4	20.9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한다	17	8.8	14.8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	14	7.3	12.2
기타	5	2.6	4.3
전체	193	100.0	167.8

가족자원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설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돌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부부가 공동’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나 혼자’ 27.9%, ‘항상 나 혼자’ 16.2%로 자녀의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해 7.4%가 응답하였으며, 돌봄의 주체가 아버지인 ‘항상 배우자가’, ‘대체로 배우자 혼자’는 각각 5.9%, 2.9%에 그쳤다.

[표 20] 돌봄의 주체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항상 나 혼자	11	16.2	16.9
대체로 나 혼자	19	27.9	29.2
부부가 공동으로	27	39.7	41.5
대체로 배우자 혼자	2	2.9	3.1
항상 배우자가	4	5.9	6.2
기타	5	7.4	7.7
전체	68	100.0	104.6

4) 학습 및 교육

설문대상자 중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교육기회 및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국어 실력 수준은 크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으로 나누고, 점수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가지 영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있는데, 대다수의 응답이 ‘보통이다’로 응답하였으나 세부 영역을 분석해보면, ‘한국어 읽기’가 다른 영역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기’는 각각 3.03점, 3.06점으로 읽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전체 한국어 능력 수준 평균은 3.14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 한국어 실력 수준

구분	전혀 못한다		조금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평균	SD
	N	%	N	%	N	%	N	%	N	%		
한국어 말하기	1	0.7	46	32.2	58	40.6	23	16.1	15	10.5	3.03	0.081
한국어 듣기	1	0.7	33	23.4	65	46.1	26	18.4	16	11.3	3.16	0.079
한국어 읽기	1	0.7	26	18.6	62	44.3	30	21.4	21	15.0	3.31	0.082
한국어 쓰기	2	1.4	38	27.0	65	46.1	21	14.9	15	10.6	3.06	0.080
전체											3.14	0.878

한국으로 이주 후, 학습 또는 교육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7%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1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24.2%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자격증 취득과정’ 23.0%가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 19.7%,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9.4%, ‘평생교육과정’ 7.4%, ‘기타’ 5.7%,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4.1%, ‘정규교육과정(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법통역사자격증’이 있었다.

[표 22] 한국어 학습 및 교육 경험

경험유무		빈도	퍼센트
없다		17	12.3
있다		121	87.7
전체		138	100.0
이용프로그램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자격증 취득과정	56	23.0	45.9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59	24.2	48.4
평생교육과정	18	7.4	14.8
검정고시과정	10	4.1	8.2
정규교육과정(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6	2.5	4.9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	48	19.7	39.3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10	4.1	8.2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23	9.4	18.9
기타	14	5.7	11.5
전체	244	100.0	200.0

경험한 학습 및 교육 외에, 향후 추가로 필요하거나 참여하기 원하는 학습 및 교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24.3%인 62명이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20.8%,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16.9%가 선택하였다. 상기 교육의 유사점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으로, 추후 논의할 취업 및 경제영역과 결부되어 있고, 위 [표 22] 결과,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과정’의 이용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용하고 싶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선택된 점은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취업에 대한 필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문화/제도)’ 10.6%, ‘정규교육과정(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8.2%, ‘평생교육과정’ 6.7%, ‘검정고시과정’ 4.7%, ‘해당없음’ 4.3%,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2.4%, 기타 1.2%가 응답하였다.

[표 23] 참여 희망 학습 및 교육

희망프로그램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해당없음	11	4.3	8.0
자격증 취득과정	62	24.3	44.9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53	20.8	38.4
평생교육과정	17	6.7	12.3
검정고시과정	12	4.7	8.7
정규교육과정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21	8.2	15.2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문화/제도)	27	10.6	19.6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6	2.4	4.3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43	16.9	31.2
기타	3	1.2	2.2
전체	255	100.0	184.8

고찰한 바와 같이, 설문응답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다음의 [표 24]와 같이 학습 및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48명의 응답자 중 68명인 27.4%가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학습과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많은 높은 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15.3%, ‘접근성의 문제’ 12.5%, ‘가사/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12.1%, ‘경제적 부담’ 8.5%, ‘학습 및 교육과정의 기회부족’ 7.7%, ‘어려움 없음’,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4.4%, ‘주변에 함께 학습/교육에 참여할 사람이 없음’ 3.2%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이었던 가족들의 정서가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24]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어려움 없음	11	4.4	8.1
접근성의 문제(예: 교통의 불편, 원거리)	31	12.5	22.8
낮은 한국어 수준	68	27.4	50.0
가사/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30	12.1	22.1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11	4.4	8.1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38	15.3	27.9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	1	0.4	.7
경제적 부담(예: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21	8.5	15.4
학습 및 교육과정의 기회부족	19	7.7	14.0
다양하지 않은 교육내용	4	1.6	2.9
수준 낮은 교육내용 및 인력(강사)	3	1.2	2.2
주변에 함께 학습/교육에 참여할 사람이 없음	8	3.2	5.9
기타	3	1.2	2.2
전체	248	100.0	182.4

5) 취업 및 경제 영역

설문응답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고찰해보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5.0%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가 45.0%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현재 근로여부와 더불어 향후 근로 의사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족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의향(이직의향 포함)을 파악한 결과 ‘취업의사있음’은 의견이 80.0%로 ‘취업의사없음’은 20.0%의 응답에 상당

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취업여부 및 의사

취업여부	빈도	퍼센트	취업의사	빈도	퍼센트
아니오	33	55.0	없다	20	20.0
네	27	45.0	있다	80	80.0
전체	60	100.0	전체	100	100.0

다음의 [표 26]은 사업장의 형태에 대한 문항으로 ‘가족 외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기타’ 27.1%,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18.6%,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17.1%로 나타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참여하는 응답자 중 임금지급여부에 대해 59.5%인 22명이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업장 형태 및 임금 여부

구분		N	퍼센트
근로유형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13	18.6
	가족 외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26	37.1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12	17.1
	기타	19	27.1
	전체	70	100.0
가족운영직장 임금 여부	그렇다	15	40.5
	그렇지 않다	22	59.5
	전체	37	100.0

현재 직업유형과 희망 직업유형을 살펴본 결과, 현재 직업유형은 ‘다문화 관련직’이 2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이 16.1%, ‘기타’가 12.6%, ‘서비스직’이 10.3%, ‘사무직’과 ‘기능·기술직’이 8.0%로 나타났다. 희망 직업유형의 경우, ‘다문화 관련직’이 18.8%로 여전히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상대적 비중은 낮아졌다. 다음으로는 ‘판매직’이 15.6%, ‘사무직’이 14.3%, ‘단순노무직’이 11.0%로 나타났다.

[표 27] 현재 및 희망 직종

현재 직업유형	N	퍼센트	희망 직업유형	N	퍼센트
관리직	2	2.3	관리직	2	1.3
농림어업	6	6.9	농림어업	4	2.6
기능·기술직	7	8.0	기능·기술직	10	6.5
서비스직	9	10.3	서비스직	16	10.4
단순노무직	14	16.1	단순노무직	17	11.0
전문직	1	1.1	전문직	12	7.8
사무직	7	8.0	사무직	22	14.3
판매직	4	4.6	판매직	24	15.6
조립·제조업	4	4.6	조립·제조업	4	2.6
다문화 관련직	22	25.3	다문화 관련직	29	18.8
기타	11	12.6	해당없음	3	1.9
전체	87	100.0	기타	11	7.1
			전체	154	100.0

현재 직업을 알선해 준 경로에 대한 설문결과, ‘모국인 친구의 소개’가 3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가 19.2%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소개소를 통한 경우’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8] 직업 알선경로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7	9.6
모국인 친구의 소개	22	30.1
한국인 친구의 소개	6	8.2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	14	19.2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3	4.1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서	4	5.5
본인이 직접 창업	6	8.2
기타	11	15.1
전체	73	100.0

다음 [표 29]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이다. 응답 중 상당수가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를 선택하였는데, 119명 중 36명 즉, 30.3%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15.1%,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10.9%가 지적인 반면, ‘상사나 동료의 무섭다’는 6명으로 5.0%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동화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29] 직장생활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36	30.3	46.2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8	6.7	10.3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13	10.9	16.7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18	15.1	23.1
상사나 동료가 무섭다	6	5.0	7.7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12	10.1	15.4
어려움이 없다	14	11.8	17.9
기타	12	10.1	15.4
전체	119	100.0	152.6

설문응답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원받기 원하는 서비스에 설문결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직장 내 의사소통·대인관계 방법 교육’ 21.5%,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18.3%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관련 ‘고충상담’이나 ‘법률상담’, ‘직장 내 다문화 인식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10%미만이 응답하였다.

[표 30] 직장생활 지원관련 희망 서비스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직장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26	28.0	34.2
직장 내 의사소통·대인관계 방법 교육	20	21.5	26.3
직장 내 다문화 인식 향상 교육	8	8.6	10.5
직장관련 법률상담 지원	7	7.5	9.2
직장관련 고충상담 지원	9	9.7	11.8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17	18.3	22.4
기타	6	6.5	7.9
전체	93	100.0	122.4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100만 -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50만 - 200만원 미만’ 26.0%, ‘50만 - 100만원 미만’ 13.7%, ‘200만 - 250만원 미만’ 8.2%, ‘월급이 없음’ 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응답자의 대다수가 다문화 관련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표 31] 임금 수준

	빈도	퍼센트
100만 - 150만원 미만	30	41.1
50만 - 100만원 미만	10	13.7
200만 - 250만원 미만	6	8.2
150만 - 200만원 미만	19	26.0
300만 - 350만원 미만	2	2.7
300만원 이상	1	1.4
월급이 없음	5	6.8
전체	73	100.0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면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자녀, 부모)를 케어로 인한 어려움’ 35명 14.9%,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14.0%, ‘기술·기능 등 경력 부족’ 11.9%로 나타났다. 반면,

‘본국에서의 경력 및 자격증 불인정’ 2.6%, ‘가족의 반대’ 1.3%로 낮은 비율이 응답하였다. 이는 앞선 설문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이 인식하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로의 동화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돌봄의 문제, 일자리부족 등은 강원도 도내의 중소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표 32] 예상되는 구직과정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어려움 없음	14	6.0	10.8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38	16.2	29.2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33	14.0	25.4
일자리 부족	24	10.2	18.5
낮은 임금·열악한 일자리 환경	22	9.4	16.9
가족의 반대	3	1.3	2.3
낮은 교육 및 학력수준	10	4.3	7.7
기술·기능 등 경력 부족	28	11.9	21.5
가족(자녀, 부모)을 케어로 인한 어려움	35	14.9	26.9
본국에서의 경력 및 자격증 불인정	6	2.6	4.6
일 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몰라서	17	7.2	13.1
기타	5	2.1	3.8
전체	235	100.0	180.8

6) 공동체 및 사회참여 영역

설문응답자들의 공동체 및 사회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들의 참여가능한 모임 및 활동을 분류한 후 집단별 참여여부와 참여한 집단의 참여빈도를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은 모임을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종교활동 7가지로 선정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인 영역은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이고, 다음으로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활동’, ‘지역주민 모임’, ‘학부모 모임’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을 토대로 참여빈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과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지역주민 모임’, ‘봉사/취미/동아리 활동’은 ‘한달에 1-2회’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낮은 참여율을 보였던 ‘종교활동’은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부모 모임’의 경우 ‘1년에 1-2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공동체 및 사회참여 수준

구분	참여경험 없음		참여경험 있음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빈도(횟수)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1년에 3-4회		1년에 1-2회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43	36.4	75	63.6	15	17.0	31	35.2	16	18.2	26	29.5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18	15.0	102	85.0	22	19.8	40	36.0	23	20.7	26	23.4
학부모 모임	77	68.8	35	31.3	2	5.0	15	37.5	6	15.0	17	42.5
지역주민 모임	90	75.0	30	25.0	8	25.8	9	29.0	6	19.4	8	25.8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82	68.3	38	31.7	6	15.0	16	40.0	12	30.0	6	15.0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53	45.3	64	54.7	14	20.3	22	31.9	14	20.3	19	27.5
종교활동	101	88.6	13	11.4	7	38.9	7	38.9	1	5.6	3	16.7

다음 [표 34]는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 또는 활동에 대한 응답으로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에 대한 선호도가 27.4%로 다른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22.4%,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17.4% 순이었다. 반면, ‘참여하고 싶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이 4.6%인 것을 본다면, 설문응답자의 상당수가 공동체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표 34]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참여하고 싶지 않음	11	4.6	8.1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33	13.7	24.3
학부모 모임	20	8.3	14.7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66	27.4	48.5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42	17.4	30.9
지역주민 모임	15	6.2	11.0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54	22.4	39.7
전체	241	100.0	177.2

다음의 [표 35]는 앞서 추론한 바와 같이, 공동체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참여에 어려운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선 자녀교육영역, 학습영역 및 취업영역과 동일하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17.7%가 사회활동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16.9%, ‘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13.5%로 비교적 높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은 2.5%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영역과 유사한 맥락으로 과거와 다르게 가족이해의 확대와 개방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사회참여의 어려움

구분	반응		복수응답 %
	N	퍼센트	
어려움 없음	23	9.7	17.2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	6	2.5	4.5
의사소통의 어려움	42	17.7	31.3
참여하고 싶은 모임(단체)가 없음	11	4.6	8.2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14	5.9	10.4
참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13	5.5	9.7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40	16.9	29.9
경제적 부담(활동비, 회비, 식사비 등)	19	8.0	14.2
접근성의 문제(교통의 불편, 원거리 등)	22	9.3	16.4
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32	13.5	23.9
주변에 함께 참여/활동할 사람이 없음	8	3.4	6.0
기타	7	3.0	5.2
전체	237	100.0	176.9

현재 생활하는 지역의 생활만족도와 거주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 34.3%, ‘보통이다’ 32.9%, ‘매우 만족한다’ 24.3%로 평균값은 3.71점이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22.5%이다. 반면, ‘이웃들이 좋아서’, ‘문화자원이 많아서’에 대한 응답은 각각 1.2%, 1.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거주지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복수응답 %
강원도 거주지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4	2.9	
	약간 불만족한다	8	5.7	
	보통이다	46	32.9	
	대체로 만족한다	48	34.3	
	매우 만족한다	34	24.3	
	전체	140	100.0	
	평균	3.71		
	표준편차	0.991		
거주 사유	직장(일터)이 있어서	12	6.9	8.6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9	5.2	6.4
	교통이 편리해서	6	3.5	4.3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	76	43.9	54.3
	자연환경이 좋아서	39	22.5	27.9
	이웃들이 좋아서	2	1.2	1.4
	자녀의 교육 때문에	5	2.9	3.6
	문화자원이 많아서	3	1.7	2.1
	다문화관련 지원서비스가 좋아서	15	8.7	10.7
	기타	6	3.5	4.3
	전체	173	100.0	123.6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에 대해 강원도에 계속하여 거주할 의사와 이주사유를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계속적인 거주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주 의사가 없는 응답자와 ‘잘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자 중 28.9%, 23.7%가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설문응답자가 가족 혹은 배우자에 뜻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고, [표 36]와 같이 자녀교육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적은 반면, [표 37]와 같이 자녀교육 때문에 이주하고자 함을 본다면, 이것 또한 거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향후 거주 의사

구분		빈도	퍼센트	복수응답 %
강원도 거주 의사	그렇다	108	78.8	
	그렇지 않다	4	2.9	
	잘 모르겠다	25	18.2	
	전체	137	100.0	
이주 사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3	7.9	8.8
	직장(일터)을 옮기려고	4	10.5	11.8
	자녀의 교육 때문에	9	23.7	26.5
	고부간 갈등 때문에	2	5.3	5.9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	11	28.9	32.4
	기타	9	23.7	26.5
	전체	38	100.0	111.8

VII. 결 론 :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도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획일적인 사업을 넘어 강원도의 지역적,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18개 시·군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반영한 수요 파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자와 공급자(종사자)의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이용자

결혼이민자를 조사한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는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 수준은 ‘본인의 부모(4.43)’, ‘자녀(4.45)’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3.79)’와 ‘배우자의 친척(3.81)’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3.75)’와 ‘기타 동거 중인 가족들’에게 느끼는 관계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세히 분석하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응답이 ‘매우 만족’과 ‘보통’에 집중되어 있지만, ‘본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에 편중되어 있다. 6가지의 가족 구성원을 각각 5점 척도로 전반적인 가족 만족도를 분석하면, 4.0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관계 전반적 만족도는 3.79(5점 만점) 수준이다.

참여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영역은 ‘음식 등 식생활’로 평균값은 2.88점이다.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2.83점,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2.82점,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2.80점, ‘가사분담 방식’ 2.78점, ‘자녀 양육 방식’ 및 ‘부모 부양방식의 차이’가 2.66점으로 동일하고, ‘의복 등 옷 입는 습관’과 ‘종교생활’이 각각 2.51점, 2.41점 순이다.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18.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 16.3%, ‘취업 및 구직의 어려움’ 14.5%,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11.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의 이용여부와 만족도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과 한국어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이용 경험도 높고, 만족도 역시 각각 4.3점과 4.4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용률은 ‘아이돌보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34.1%이고, ‘도서관(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39.8%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4.2-3점 대

로 높은 수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의사소통 문제, 정보전달 문제 등)’으로 21.9%로 가장 높았다. 언어 문제는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움’으로 18.4%이다. 산간 내륙지방 등 중·소도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한국 사회적응 및 생활정착지원’으로 다중응답 전체 응답 중 22.3%에 해당하는 61명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서비스는 ‘취업지원(취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19.3%이다. 응답자의 55.0%가 미취업 상태인데,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0%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자(이용자)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만족도, 선호하는 프로그램, 각 영역별(자녀양육, 학습, 취업, 공동체 등) 만족도, 어려움, 욕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욕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언어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소통의 문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역시 동일한 의미와 영향력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특성화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관련 사업의 절대적 비중이 ‘언어’와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언어가 결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적응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만족도가 높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언어소통의 문제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 뿐만아니라 언어소통의 취약함으로 가정내 부분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취약함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문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욕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장애 요인으로 언어소통의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는 취업의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취업할지라도 직장내 어려움의 유발요인으로 언어소통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언어소통의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의 개별적 노력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선제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험에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언어지원에서 자국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공서를 중심으로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공문서 양식 등 일종의 <한국어 plus> 프로그램을 도입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교육 방식 역시 현재와 같은 지원방식과 더불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단기 집중 교육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예컨대 농한기 시기에 지역대학생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집중 교육활동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언어습득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digital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 역시 시급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가족해체에 직면한 가정들이 현재화되고 있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전 예방과 함께 이혼 후 자녀들이 요보호 아동 상황에서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이민자 취업과 결부되어 있다. 일자리의 문제와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의 문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군 지역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민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 때 취업의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취업장벽 해소를 위한 언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취업 후 직장적응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급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그리고 홍보 및 자원연계가 기본사업이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이 있다. 이상의 사업에 더하여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센터 조건에 맞은 소위,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실상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의 과도한 부담은 모든 센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사업비 내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무자가 복수의 사업을 담당하는 상황을 ‘인력난’이라고까지 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1인 1사업 담당이 합당한 업무분장이라고 볼 수 없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이라고도 할 수 없다. 적정한 업무 가짓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난’을 언급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 담당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지침 해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거점센터가 연계하여 매년 지침 해석 및 운영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민관 연찬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 인건비, 강사비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센터사업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센터 근무자 간 인건비 책정 기준, 호봉 인정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직원 간의 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센터 간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위 주무관 예산, 즉 담당 주무관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의 차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무관 예산이다. 이 같은 근로조건 속에서 지역별, 센터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넘어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 대상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초기 정착지원 중심에서 장기정착화를 위한 지원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 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정책(특히, 대학입시정책 및 진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중고생)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사업을 센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등 전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지원하는 형식이 적절하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생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하여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한 후 본인들이 전문적이고, 고용안정적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식당의 주방보조 등 단순,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취업능력이 구비된다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한계와 노동시장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로 인하여 외부노동시장,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형태의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실제 이러한 교육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고, 정작 발상의 전환 혹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센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고령층의 정보접근성과 확보가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지역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은 자국민과 이민자 가정을 통합하여 “교육”이 아닌 “문화공유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나누는 활동 혹은 통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동일하게 모집하여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교육이 아닌 일상의 공유, 모듬활동을 통한 체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거점센터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거점센터는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이어야 하는 데 속초센터가 적절한 지역인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센터의 물리적 이전으로 센터 소속 직원들이 근무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 있으며, 차후 수탁센터가 변경될 경우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관리 지역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에 수탁한다는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 거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이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타당한 정책방향이다. 다문화가족의 구성, 아동의 성장에 따른 영유아 집중지원에서 중등 및 대학 입학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정책으로 변화, 다문화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아이들의 증가 등을 보면 장기정착화로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정착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궁극적 요인으로 언어소통의 문제, 앞서 본 연구는 이를 현실의 악순환의 고리가 명명했다.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 미국의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프로그램

미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적복지 혜택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라면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즉, 다문화 혹은 이민자 가정만을 위한 복지제도는 아니다).

1) 신분안정 지원

(1) 여성 폭력 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학대 또는 폭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자가 청원”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민 혜택이다. 즉, 피해자인 신청자가 학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대신, 신청자 스스로가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해 폭력적 관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관계가 종료되면(예: 가해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VAWA 청원서는 관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률은 “여성 폭력 방지법”이라고 불리지만 성별, 인종,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인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미국에 남겨지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DACA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률이 아니라 오바마 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DACA 승인을 받은 청소년은 서류 미비 신분이어도 2년 동안 “추방 유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DACA 수혜자는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DACA 신분과 노동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DACA는 여러 가지 연방 소송의 주제이며, 그 상태는 종종 유동적이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2018년에 DACA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제기를 개시하였고, 9개 주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텍사스 법원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고등 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판결로 DACA는 다시 제한되고 있다.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DACA를 획득한 사람들의 경우, DACA 지원금 및 노동 허가는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DACA 수혜자들도 사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USCIS는 최초 DACA 신청의 처리 또는 승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경제생활 보조

(1) 소셜 시큐리티 생활 보조금(SSI)

SSI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령자,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에게 매달 음식, 의복 및 하우징을 위해 매달 현금을 지원한다.

(2)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SD)

SSD는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노동자 및 수혜 자격이 있는 가족 인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 미망인, 자녀 또는 어렸을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성인은 누구든지 SSD 수혜 자격을 가진다.

(3) 연방, 주, 시에서 제공하는 자녀와 부양가족 양육비 세금 공제

이 세금 공제 혜택은 신청자 본인이 일을 가야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자녀나 부양 가족을 맡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4) 연방, 주 및 시 근로소득세 공제(EITC)

근로소득세 공제 (EITC)는 연방, 주 및 시에서 저소득 가정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이다. 이 혜택은 미지불된 세금을 삭감해 주거나 혹은 빚진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하여준다.

3) 건강보장

(1) Medicare

메디케어는 노령자 및 특정한 장애 또는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파트 A는 전문 간호시설, 병원, 호스피스에서 제공되는 입원 치료 및 홈 헬스케어 등이 혜택에 포함되고, 파트 B는 외래환자 치료, 의사 서비스, 혹은 예방 서비스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노령자 의약품 보험 혜택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EPIC)

EPIC는 노령자의 처방약 값 지불을 돕는 처방약품 플랜이다. EPIC는 처방약품 Medicare의 다른 처방약품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약값을 줄여준다.

4) 식품보조

(1) 푸드스탬프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다. 푸드스탬프 저소득 가정은 푸드스탬프를 사용하여 다수의 식품점과 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귀하가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직불카드(debit card) 처럼 사용되는 카드를 받게 된다. 비상 시에는 일반 푸드스탬프 보다 신속히 제공되는 급행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다.

(2)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CSFP)

저소득층 어머니, 임신부, 어린이 및 최소 60세인 노령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된다. 식품은 한달에 한번 특정한 장소에서 취득할 수 있고, CSFP와 WIC에 동시에 가입될 수 없다.

(3)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WIC은 우유, 주스, 유아용 유동식 및 기타 건강 식품을 저소득 임신부, 어린이 및 어머니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또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되며, 푸드스탬프, 현금 보조 또는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는 여성은 자동적으로 WIC 수혜자격이 생긴다.

5) 아동복지서비스

(1) 차일드케어(Child Care)

어린이 서비스 관리국(ACS)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 가정에 차일드케어 바우처나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차일드케어를 제공한다. ACS 차일드케어의 주당 수수료는 가정 소득에 의해 다르다. 풀타임 케어 수수료는 그 가정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부모님들은 파트타임 케어에 등록할 수도 있다.

(2) 조기 교육

유아 조기 교육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신생아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에게 무료 교육프로그램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체류신분 문제가 없고 현금 보조나 SSI 수혜 가정의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있다.

(3) 보편적 조기교육(Universal Pre-Kindergarten)

프리킨더는 어린이의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4살 이후라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6) 주택 보조

(1) Section 8

섹션 8 보조는 저소득 가정의 아파트 렌트비 지불에 도움을 준다. 신청자는 가정 소득의 30%를 렌트비의 일부로 지불해야 하고, 신청자가 직접 아파트를 물색해야 하며 아파트 주인이 섹션 8 프로그램에 보조를 받아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현재 섹션 8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방 검사에 의해 위탁되거나 가족결합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ACS Family Unification and Independent Living Programs)에 의해 위탁된 경우, 혹은 가정 폭력 피해자일 경우에만 진행 가능하다.

(2) 장애인 주거비지원(Disability Rent Increase Exemption)

DRIE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렌트비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렌트비가 오를 때 집주인에게 추가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은 시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는다.

(3) 노인주거비 지원(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

SCRIE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렌트비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렌트비가 오를 때 주인에게 추가 금액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시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는다.

(4)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HEAP는 주택 난방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1년에 \$40 - \$540까지 지급한다. 연료가 고갈되기 직전 또는 난방공급이 중단되기 직전일 경우에도 HEAP 비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뉴욕주 이민자를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

다문화 및 이민자 가정만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민 신분 상태에 상관없이 합법 이민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에게도 지원되는 뉴욕주 공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이다.

1) 신분 지원(IDNYC)

IDNYC는 5개의 boroughs(뉴욕 자치구) - Manhattan, Queens, Bronx, Brooklyn, and Staten Island의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무료 신분증 카드이다. 2015년에 시작된 IDNYC는 미국 최대 규모이고 가장 성공적인 지자체 신분증(ID) 프로그램이다. 10세 이상의 뉴욕 거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이 신분증은 5개 자치구의 사업체와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신분증은 뉴욕시 경찰서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으로 모든 시립 건물과 공립 도서관 등에 출입할 수 있고 취업 및 의료 혜택(예방접종), 은행계좌 개설, 주거혜택(NYC Housing Connect)이 신청 가능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IDNYC는 노숙자, 청년, 고령자, 서류미비 이민자, 전과자 및 그 밖에 정부 발급 신분증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혜택 지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 의식주 지원

(1) 양육서비스(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자녀 양육비 서비스(Access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HRA))는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현금 지원 및 특별 보조금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HRA를 통해 소득이나 이민 신분 상태에 상관없이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는 보호자는 가정법원의 OCSE 사무국을 방문하여 자녀 양육비로 현금 보조금이나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OCSE에서 면담을 해야하고, 부모의 소재, 친자관계 수립,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 수립 등을 파악 후 양육비를 전달한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퍼센트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비양육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OCSE는 해당 부모를 취업 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다.

(2) Food Help NYC

푸드 팬트리나 커뮤니티 키친 등을 지원하며, 16세 이상이고 합법적 이민 상태라면, Access HRA, SNAP센터, 또는 HRA 구직 센터에서 식료품 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소득, 가구 구성원 수, 시민권 또는 체류신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결정된다. SNAP 수령자는 월 \$5로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저지시티 등 지역을 45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된 Citi Bike 멤버십을 받을 수 있다.

(3) NYC Housing Connect

18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추첨을 통해 뽑히게 되면 구체적인 수령 조건 확인 후 주택 임대 혹은 구매를 보조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중위 소득 백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장애인 신청자를 위한 임대 주택도 제공하는데, 신체,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하고, 저소득 가구 주택 외에도 장애 유형이나 장애인이 한 명 있는 이상 있는 세대 대상의 경우 자격 대상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18세 이상이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주택 렌트비 지원서비스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지원자는 우선순위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10대의 경우, 법원명령, 결혼,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서류 미비 이민자라면(가족 중 최소 한명이 합법 이민자인 가정인 경우에 한함) 개인 소득, 공공부조, 보조수당 포함한 가정 소득이 NYCHA에서 지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하다. NYCHA와 Section 8에 모두 지원 가능하며, 한 곳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한곳에서의 보조비는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18세 이상이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주택 지원서비스이다(이민자 및 서류 미비 이민자라면 가족 중 최소 한명이 합법 이민자인 가정 포함한다).

3) 법률 보호

(1)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권법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민 신분, 출신 국적, 또는 국가와 관계없이 근로자 권리를 부여한다.

1-a: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연간 80시간 이상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매년 최고 40시간의 안전 휴가 및 병가를 낼 수 있다.

1-b: 최저급여: 뉴욕시 최저급여는 패스트푸드점 직원 및 기타 모든 직원은 \$15이다.

1-c: 초과근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넘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고용주가 정해진 급여의 최소 1.5배에 상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d: 차별금지 환경: 시, 정부, 연방 정부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한 차별 또는 괴롭힘 행위는 금지되어있다(예: 이민자 자격, 인종, 국적, 종교, 피부색,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임신, 성적 지향, 전과 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위, 간병인 지위).

(2) 이주 노동자 건강 및 보험

1-a: 안전한 근무 환경: 직장에 알려진 보건 및 안전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있다면 사전에 정보를 전달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b: 산재보험: 업무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현찰로 임금을 받든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임금을 받든, 독립 하청업체로 급여를 받든 주급과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인력개발 및 고용 지원

(1) We Speak NYC

뉴욕시 이민자들이 영어를 연습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신청을 돕도록 제작된 TV 프로그램이다. 이 TV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겪는 이야기와 짧은 에피소드로 만들어 이를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영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 We Speak NYC는 뉴욕 5개 자치구(Manhattan, Queens, Bronx, Brooklyn, and Staten Island)에 있는 여러 파트너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최하고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수업을 열어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대화 그룹을 통해 이민자들의 영어 연습과 교육, 취업, 이민자의 법률적 권리, 건강 및 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NDA Adult Literacy Program(BENL/ESOL)

취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가르친다.

(3) 여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 SYEP)

14세 - 24세 청소년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 DYCD)의 여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을 받으며 근로 경험 및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 및 실무교육, 프로젝트 참여, 재정교육, 인턴십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뉴욕주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이민자에게도 혜택 지원)

지난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미국 의회에서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사업자,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 항공 등 산업부문에도 피해 구제 책임을 위한 경기 부양으로, 시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에게도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뉴욕주를 대표적으로 적었지만,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등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실업 및 소득 지원금

(1)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UI))

본 지원금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두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실직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18개월 이내에 뉴욕주에서 근로한 사람은 UI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 상태인 기간에 최대 25주 동안 매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100 - \$500으로, 과거 본인이 받았던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UI를 받기 위해선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 및 정부 발행 ID 카드,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카드번호가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 판데믹 실업 지원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본 지원금은 일반 UI에 대한 자격이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미국 연방 노동부로부터 매주 지원금을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 근로자, 독립 계약자 및 최근 근로 경력이 없는 사람, 세금 신고자, 농부, 하청 업자 등이 포함한다. 또한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세대주 사망으로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생긴 사람 혹은 세대원을 돌보는 사람 또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로 일을 그만두거나 유급 질병 또는 휴가 혜택을 받는 경우, PUA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주의 경우, 최소지원 금액은 \$186 이고 최대 금액은 \$504이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3) 유행병 전염병 실업보(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본 지원금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를 제외하고, UI신청자와 PUA신청자에게 새 연방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따로 PUC혜택을 제공한다. 매주 혜택 금액은 \$600이다.

모든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4)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

본 지원금은 American Rescue Plan Act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2019년 세금 보고를 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200 이고 자녀당 \$5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 지원금은 1차례만 지급되며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받을 수 없다. 2021년 3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2020년 세금신고를 한 개인에게 최대 \$1,400, 부부의 경우 최대 \$2,800, 각 피부양자의 경우 최대 \$1,400을 제공한다.

(5) 소외 노동자 지원금(Excluded Workers Fund)

본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체류신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실업보험(UI)자격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자는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시민권 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제공한 정보에 따라 등급 1과 등급 2로 나뉘어진다. 등급1은 최대 \$15,600, 등급 2는 최대 \$3,200의 수당이 지급되며 일회성 지원금이다.

2) 건강 보험 지원

(1) 통합 옴니버스 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적용되는 뉴욕주 건강 보험 보장 플랜이다.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과 같은 플랜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주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20명 이상인 업체들은 COBRA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 전 배우자, 부양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코로나로 인해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실직자들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미국 구조 계획 법안에 따라 무료 또는 낮은 경비로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보험료 상한선을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기존 가입자들은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월 보험료가 전혀 없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10달러 미만의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검사, 치료, 예방관리는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공공혜택을 받은 자들이 이후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공적 혜택을 받은 이유로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적부조심사는 영주권 또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장래에 공공혜택에 의존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관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특정 기간 이상 공적부조를 받은 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상당 부분 거부하였다. 단, 범죄 사건 피해자, 귀화, 난민 등의 이민 사례는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 보험이 없이도 코로나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응급실, 커뮤니티 및 이주 보건소, 무료 진료소, 공공 병원에서 받는 진료가 해당된다. 또한, 연방 지침은 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병원, 진료실, 보건소, 긴급 진료 시설과 같은 의료 시설에서 이민 요원들의 체포 또는 기타 단속 활동 수행을 금지하여 병원과 보건소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뉴욕시 건강보험(NYC Health and Hospitals)

서류 미비 아동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저비용 및 건강 보험으로 Medicaid, Child Health Plus, Essential Plan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4) 무료 코로나 백신(Free Vaccinated Program)

보건부는 지역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백신접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민 체류 신분, 장애 여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 5월 10일, 12세~15세 청소년들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를 확대했다.

5) 주거 지원

(1) 강제퇴거 및 압류 긴급방지법(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 of 2020)

이 법은 임대인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소득을 잃거나 비용이 증가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기저 질환으로 인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코로나의 중대 질병 또는 사망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이사를 하는 것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할 수 있는 퇴거를 방지한다. 세입자는 해당 보호를 받으려면 고난 신고서(hardship declaration)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긴급 월세 지원 프로그램(ERAP)

코로나 기간 동안 집세를 낼 수 없었던 세입자에게 무료 긴급 월세 구제를 제공한다. 자격이 되는 저, 중산층 가정은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3) 모기지 상환 유예 정책(Mortgage and Foreclosure)

코로나 생계 곤란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서비스 기관이나 대출 기관에서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모기지 상환 납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상환금을 줄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조치이다. 또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밀린 상환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나 벌금 또는 이자가 없으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다. 서비스 기관에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리면 된다. 상환 유예는 보통 3-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더 필요하다면 연장 요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납한 납부금이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환 유예를 받았더라도 미납한 납부금을 여전히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재융자 또는 주택을 판매할 때 상환할 수도 있다.

(4) 주택 긴급 현금 지원(Emergency Cash Assistance)

코로나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 긴급 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이민 신분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6) 교육 지원

(1) 긴급 광역권 혜택(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EBB))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있음에 따라, 연방 통신 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종식 때까지 저소득층에게 월 \$50, 인디언 거주지 주민에게는 \$75 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혜택 가정이 \$10 - \$50 미만의 기부에 참여할 경우,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구매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10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BB 신청 조건은 연방 빈곤선의 135% 이하, SNAP/메디케

이드 프로그램 가입자, 자녀가 무료급식을 받는 경우, 2020년 2월 이후 실직자 등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드를 대여해 주고 있다. 해당 제품에는 데이터 요금제가 포함되어 있다.

7) 법률 지원

뉴욕시 법원들은 전자 및 가상운영을 하고 있고 뉴욕주 법원 전자접수 시스템 승인을 받은 경우, 보류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신규 소송을 개시 할 수 있다.

(1) Action NYC: 뉴욕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시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민 심사, 임차인, 이민자, 저임금 근로자 등이 경험하는 민사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법원: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다. 뉴욕시 가정법원은 가상법정을 만들어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심리를 전화나 스카이프를 원격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에는 보호명령에 대한 신규 신청이 포함되는데 판사가 원격으로 심리를 한다. 2020년 3월 이후에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보호 명령이 있었을 경우(뉴욕주 발행), 그 보호명령은 행정적으로 연장되며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원격 심리 사안에는 양육권, 면접교섭권, 보호명령, 피부양자 부양, 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등의 사안이 포함된다. VAWA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로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을 받지 않고도 판데믹 여부에 상관없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8) 식품 및 생필품 지원

(1) 긴급 식품 제공 서비스(COVID 19 Food Hub NYC)

이민 신분 상태에 상관없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0am - 1:30pm까지 운영되고 있다.

(2) 긴급 주민 필수 지원 프로그램(Operation Pitter Patter)

텍사스주 달라스 시장과 시의회가 지역 비영리 기관이 협력하여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되는 기본 생필품에는 영아를 위한 기저귀와 분유, 여성과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등록을 통해 코로나 여파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바를 증명해야 한다.

4. 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 및 이민 복지정책

구분	목적	프로그램 / 기관명	프로그램 특징	Source
교육	학비 보조 프로그램	뉴욕 학비보조 프로그램 (TAP), 시간제 교육지원(APTS), 연방무상학자금 (Pell Grants), 연방 추가교육 기회보조금 (FSEOG), 퍼킨스융자(Perkins Loans), 스탠포드융자(Stafford Loans), 학부생 을위한학부모대출(PLUS), 연방 근로학생 지원 (Federal Work Study)	서류 미비 이민 신분 학생 의 경우 제외	연방 & 뉴욕주
	장학금 프로그램	Educational Opportunity Program (EOP), Search for Education, Elevation, and Knowledge (SEEK), College Discovery (CD)	뉴욕 시립대와 주립대의 경우, 이민자 신분 상관없이 장학금 수혜 가능	연방 & 뉴욕주
	학부모 언어지원	학교 별 학부모 코디네이터 담당	학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 혹은 통역을 통해 정보를 요청 가능	뉴욕주 교육부 (DOE)
육아	빈곤가정 아동 케어 서비스	워싱턴주 보건사회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Services)	직장인 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와 계절별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자녀가 시민권 요건을 충족할시,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홈리스 생활 가정 혹은 친척양육 가정 또한 서비스 보조금 지원.	워싱턴주

구분	목적	프로그램 / 기관명	프로그램 특징	Source
이민	새 거주지 정착 지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1. 취업에 필요한 준비 지원: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무료 언어 교육 등 2. 거주 장소 탐색 지원 3. 이민 이후 겪는 트라우마,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관련 상담 지원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보호	피난민 재정착 사무소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 건강관리, 교육, 법률, 사회적 지원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이민자들의 이민 사건이 해결 될때까지 보호하고 복지를 제공	뉴욕주 & 뉴욕시 & 비영리기관
사업	소규모 사업 사업자들 (소수민족과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 지원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부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뉴욕시 사업애로해소 센터 (Business Solution Center)	1. 경영/사업계획 교육 2. 무료 법률 검토 3. 융자업체 선별 지원 4. 구직정보/ 채용지원 5. 기업 보증서 발급 6. 직원 교육자금지원 7. 사업확장 장려금 제공	뉴욕시
건강	이민 신분 혹은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	1. 클라이언트 지원 (주택 바우처, 교육기관 등록, 가족 재결합, 재활과 등록, 아동보호 및 쉼터 연계) 2. 현장방문 (임상) 및 응급 서비스 3.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개입	LA 카운티

5.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난민, 이중언어/다중문화권 가족지원복지기관 프로그램

기관명	기관 소개	대표 프로그램
Access Alliance -Multicultural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토론토)	다문화/이민/난민 커뮤니티의 기초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영양 관 리, 재정교육 제공	1. Green Access Program: 루프탑에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어 누구나 건강한 음 식을 직접 재배하고 먹을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 이외에 환경인식, 가드닝, 영양 관련 트레이닝 제공 2. 재정교육: 일대일 코칭과 상담을 통해 빈곤탈출과 보건 관련 캐나다 시스템을 알려주고 세금, 신용, 저축, 가계예 산, 부채관리 등 정보 제공 3. Peer Outreach Program: Access Alliance가 제공하는 200시간의 트레이닝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역사회 지원활동 할 사람 (주로 여성)을 고용. 소외된 다문화/이민/난민 가정 대상으로 여성 이민자를 위한 육아, 식단, 라이프 스킬 등 워크샵 제공. 이 외에도 공공기관 (자녀 학 교, 이민기관 등)에 필요한 통/번역과 동반 방문 서 비스 제공 4. 사례관리: 코로나 19 이후로, PS Suite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와의 비대면 상담 진행(이는 별도의 시간 제약, 이동시간, 자녀케어시간 등을 없애 활발한 커 뮤니케이션과 참여율을 높였다고 함 → 2020-2021 년 보고서 참고 p.7) https://accessalliance.ca/about-us/annual-reports/
Polycultural Immigrant & Community Services (토론토)	이민/다문화 가정 전반적 지원 (여성, 청소년, 가족 서비스)	청소년 취업프로그램 (15세-29세): 실무경험, 고용 포지션에 맞는 교육 (60-90시간), 직업 매칭, 동기부여 등 지원. 이민청소년들의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

기관명	기관 소개	대표 프로그램
Immigrant Women's Centre (해밀턴-캐나다)	이민여성의 취업과 거주, 자녀교육 및 정착 서비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노동부 지원): 트럭운전, 개인비서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실무 경험 &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등 준비 제공
Calgary Immigrant Women's Association (캘거리-캐나다)	다문화/이민 가정의 가정폭력 및 부모교육 상담 및 건강 서비스 지원	1. 다중 문화/언어 가정의 어려움 상담 (cross-cultural parenting) 2. 부모 교육 및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 3. 가정폭력, 아동폭력 예방 교육 및 지원 4. 노년의 이민여성 가정 방문
Open Doors (워싱턴)	장애 서비스, 특수 교육, 및 주류 사회 서비스 액세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22개의 언어지원을 통해 도움	장애 가족 서비스: 1. 개별 가정방문 (언어 및 문화 지원) 2. 발달 장애, 아동 발달, 특수 교육에 필요한 보조 시스템(IDEA/IEP/IFSP) 이용 교육 3. 부모가 부모의 멘토링 4. 학부모 리더십 참여개발 5. 학부모 정보 및 교육지원단(언어지원, 회의 참석, 현장 방문) 6. 다문화 가족모임 7. 커뮤니티 파트너십 및 협업을 통해 문화 네트워크 구축(장애 인식 홍보, 장애 연구를 위한 부모 포커스 그룹 구성 등)
Ozarks Area Community Action Corporation (OACAC) (미주리)	커뮤니티 대상 가족 계획, 수양 가족, 주거 및 렌트비 지원 등 제공	Hear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HOME): 비슷한 이민 혹은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정 또는 커뮤니티를 연계해주고 다양한 주류사회 정착을 돕는 워크숍 제공 프로그램. 출신 문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및 사회적 차별, 고립감, 정체성 혼란 등을 멘티와 멘토가 상호적 경험 교류를 통해 완화

기관명	기관 소개	대표 프로그램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NYIC) (뉴욕)	다문화/이민 커뮤니티와 관련 복지 기관들의 이민개혁, 이민 사회발전 캠페인, 사회 변화 운동 등 직접적 참여를 이끔 200개의 비영리 기관 및 단체와 연합되어 있으며 뉴욕 주 전체 이민 개혁 관련 캠페인 자료 및 트레이닝 제공 & 이들과 함께 시위	최근 진행 중인 사회 캠페인 및 운동 1. Access to Representation 모든 이민자들이 추방문제를 겪을 때 변호사 선임을 보장 해줄 수 있는 조례안 2. Coverage 4 All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 (서류 미비자 포함)들을 위해 주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보장을 요구하는 조례안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 보험 적격 기준 조정 요구가 많아짐) 3. Voting Rights 비시민권자 - 영주권, 취업비자를 소지한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도 선거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조례안 최근 대표적 업적: 1. 운전면허증 발급 뉴욕주 거주중인 모든 이민자 (서류미비자 포함)의 운전면허 취득 자격 법안 요구 → 2019 년 12월 공식 실행됨 2. 코로나 이후로 실업자가 된 다문화/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연방 & 주정부의 지원금 제공 법안 요구 (특히 일용직 노동자, 농업종사자 등) → 2021년 3월에 공포됨.

기관명	기관 소개	대표 프로그램
CONSEJO (워싱턴)	청소년 & 성인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상담치료 및 자원연결 이중언어/문화, 이민자, 저소득 성인 등의 입원 및 외래 환자에게 개별 맞춤 치료와 가족 서비스 제공	약물중독 예방 및 개입치료 외,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위한 프로그램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위험시그널 교육 2.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 (가족, '죽음'에 대한 상담) 3. 갭 활동 방지 교육 성인 프로그램 1. 이중언어와 이중 문화를 구사하고 이해하는 스테프와 프로그램 제공 2. 라이프 스킬, 가족서비스, 식단/영양 상담, 교통 서비스 제공
Multicultural Community Family Services (펜실베이니아)	다문화 가족의 성인교육, 노인 건강, 개인/그룹별 정신상담, 사회참여, 이민 프로세스 등 지원	1. 성인 검정고시 교육 및 학교 등록 2. 취업 준비 및 직업 연결 3. 건강관리 지원 (뇌졸중, 낙상, 고혈압, 당뇨병, 치매, 코로나 후유증 등 만성 질환 진단 받은 개인의 건강 회복을 도움)

6.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실태	문제점	필요한 프로그램	출처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요구 증가	(1) 이중언어/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자원부족 (2) 언어와 문화 장벽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언어 통역 제공필요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입법부 및 의료기관, 복지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 이민자 관리를 위한 직원 채용 및 교육	Min, J. J., Choi, S., & Park, H. (2021). Associations between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 social support, and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 status amid the COVID-19 pandemic. BMC Public Health, 21(1), 1-10. doi.org/10.1186/s12889-021-11820-7
이민자/다문화 가정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에 관한 맞춤 자원/시스템 부족	(1)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2) 긴 대기목록 (3) 법원 의무 프로그램이나 심각한 건강 손상으로 응급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게 됨	클라이언트가 구사하는 언어로 된 프로그램 필요. (1) 이민자들의 배경,문화, 언어에 맞는 치료 옵션과 상담 부족 (낙인, 나라별 통념 등) (2)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서비스 확대 및 법률적 지원 (치료중 추방/체포에 대한 두려움) (3) 이민 여성의 약물/알코올 중독 치료 서비스 확대 (대부분의 치료 대상이 남성 클라이언트 중심)	Pagano, A. (2014). Barriers to drug abuse treatment for Latino migrants: Treatment providers' perspectives.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13(3), 273-287. doi: 10.1080/15332640.2014.886320

실태	문제점	필요한 프로그램	출처
아시아 이민자들의 게블링 중독	이민자, 난민, 커뮤니티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시아 계층의 게블링 중독 문제 비율이 알코올/약물 중독비율보다 높음. 원인: 주류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요인, 이를 해결해 줄 커뮤니티 자원 부족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이중언어 혹은 다문화 커뮤니티에게 맞는 엔터테인먼트 &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구성 출신 국가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지원	Wong, C., & Li, G. (2020). Talking about Casino Gambling: Community Voices from Boston Chinatown.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Publications, 45. https://scholarworks.umb.edu/iaas_pubs/45

[부록 2] 설문지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요 조사】

2021년 11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의회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만족도 및 수요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2021년 강원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강원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연 구 기 관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책임자 : 유만희

연 구 원 : 신민정

I. 기본사항 및 가정생활

■ 개인특성

1.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시/군 ()읍/면/동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4. 귀하의 출신국을 선택하거나 적어주세요.
 ☐ ① 중국 ☐ ② 베트남 ☐ ③ 필리핀 ☐ ④ 일본 ☐ ⑤ 대만 ☐ ⑥ 캄보디아
 ☐ ⑦ 태국 ☐ ⑧ 우즈베키스탄 ☐ ⑨ 몽골 ☐ ⑩ 기타()
5. 귀하의 교육정도를 선택해주세요.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③ 중학교 졸업 이하 ☐ ④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⑤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하 ☐ ⑥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 ⑦ 기타()
6. 귀하의 대한민국 입국 시기를 적어주세요. ()년도
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귀화)하셨나요? ☐ ① 취득안함(귀화안함) ☐ ② 취득함(귀화함)

■ 가구특성

1. 귀하의 혼인상태를 선택해주세요.
 ☐ ① 결혼 ☐ ② 동거(사실혼) ☐ ③ 재혼 ☐ ④ 이혼(2 문항으로)
 ☐ ⑤ 별거(2 문항으로) ☐ ⑥ 사별 ☐ ⑦ 기타()

1-1.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기간(동거 포함)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2. 이혼 또는 별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 ① 외도 등 애정문제 | ☐ ② 성격차이 |
| ☐ ③ 배우자 및 가족과의 갈등 | ☐ ④ 경제적 문제 |
| ☐ ⑤ 자녀문제 | ☐ ⑥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 |
| ☐ ⑦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 | ☐ ⑧ 배우자의 가출 |
| ☐ ⑨ 기타: | |

3.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① 본인(3-1 문항으로) ☐ ② 배우자(3-2 문항으로) ☐ ③ 자녀 없음

3-1.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① 받고 있음 ☐ ② 받고 있지 않음

3-2. 귀하는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까?

☐ ① 주고 있음 ☐ ② 주고 있지 않음

3-3. 귀하는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 ☐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
| ☐ ③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편지 등으로만 하고 있다 | ☐ ④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고 있다 |
| ☐ ⑤ 만나지도 않고, 소식도 모른다. | |

4. 귀하의 가구 월소득정도를 선택해주세요. () * 모든 가족구성원의 소득 합
 5. 외벌이/맞벌이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____① 외벌이 ____② 맞벌이 ____③ 기타()
 6. 함께 사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7.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 형태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____① 배우자 ____② 자녀 ____③ 시부모 ____④ 친정부모 ____⑤ 형제자매 ____⑥ 친척 ____⑦ 기타()
 8. 자녀 유무 선택과 자녀 수를 적어주세요. ____① 자녀없음 ____② 자녀있음 ()명

■ 배우자특성

1. 귀하는 다음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부모					
③ 배우자의 친척					
④ 본인의 부모					
⑤ 자녀					
⑥ 기타 동거 중인 가족					

2. 본인이 생각하는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를 선택하여 주세요.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의 관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남편(아내)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② 남편(아내)으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③ 남편(아내)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					
④ 내 고민에 대해 남편(아내)과 이야기할 수 있다.					
⑤ 남편(아내)은 내 여가생활을 지지해준다.					

3. 귀하는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다음의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없다	가끔 있다	보통	자주 있다	매우 자주있다
① 음식 등 식생활					
② 의복 등 옷 입는 습관					
③ 자녀 양육 방식					
④ 가사분담 방식					

⑤ 부모부양방식					
⑥ 가족행사 등 가족 의례					
⑦ 종교생활					
⑧ 저축, 소비, 돈 관리 등 경제생활					
⑨ 대화 등 의사소통방식					

4. 귀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합니까?

- ___ ① 항상 본인 ___ ② 대체로 본인 ___ ③ 부부공동
 ___ ④ 대체로 배우자 ___ ⑤ 항상 배우자 ___ ⑥ 기타()

5. 귀하는 배우자와 최근 다툼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예(5-1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오(5-2번 문항으로)

5-1. 귀하는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다투십니까?

- ___ ① 월 1회 이내 ___ ② 월 2회 이내 ___ ③ 월 3회 이내 ___ ④ 월 4회 이상

5-2. 귀하는 최근 배우자와 다툼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성격차이 | ② 배우자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 ③ 본인 가족(친척 포함)과의 갈등 | ④ 문화, 종교, 가치관 차이 |
| ⑤ 언어소통의 어려움 | ⑥ 외도 문제 |
| ⑦ 자녀의 교육 및 훈육 | ⑧ 폭언 또는 폭행 등 가정폭력의 문제 |
| ⑨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 | ⑩ 음주 문제 |
| ⑪ 나에 대한 심한 의심(외출 제한 등) | ⑫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
| ⑬ 기타: | |

5-3. 귀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그냥 참고 이해한다 | ②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
| ③ 쇼핑을 한다 | ④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
| ⑤ 술을 마신다 | ⑥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 |
| ⑦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야기 한다 | ⑧ 전문가와 상담한다 |
| ⑨ 종교활동을 한다 | ⑩ 집을 나간다(가출) |
| ⑪ 기타: | |

■ 본인특성

1.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어려움 없음 ② 고독함/외로움

- ③ 경제적 어려움
- ⑤ 부부/가족 간의 갈등
- ⑦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⑨ 문화와 관습의 차이
- ⑪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이용의 어려움

- ④ 취업/구직의 어려움
- ⑥ 사회적 관계/대인관계의 어려움
- ⑧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 ⑩ 차별과 편견
- ⑫ 기타:

2.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___① 매우 나쁘다 ___② 나쁜 편이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좋은 편이다 ___⑤ 매우
좋다

3. 귀하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___① 전혀 없다 ___② 가끔 있다 ___③ 자주 있다 ___④ 항상 그렇다

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내 인생은 내가 꿈꿔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					
② 나의 생활여건들은 아주 좋은 편이다.					
③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④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성취해왔다.					
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수준

1. 관내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만족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경험 유무		만족 수준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동·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이민자통합센터							
④ 일자리센터							
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⑥ 여성인력개발센터							
⑦ 종합사회복지관							
⑧ 기타 외국인 지원단체							
⑨ 도서관(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2.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만족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경험 유무		만족 수준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							
② 한국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③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④ 임신·출산 지원							
⑤ 부모교육							
⑥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⑦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⑧ 사회 활동 지원(자조모임 등)							
⑨ 각종 상담 (가족관계, 비자 및 국적 취득 관련 법률 상담 등)							
⑩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⑪ 아이돌보미(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							
⑫ 도서관(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3. 귀하가 지금까지 받으신 지원서비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4. 귀하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2개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족이 반대해서

④ 신청방법을 몰라서

⑤ 받을 필요가 없어서

⑥ 기타()

5. 귀하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음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강의형 및 강연형

② 상호작용 및 대화형(동아리, 멘토링, 소집단 등)

③ 관람형 및 현장견학형

④ 실연형(체험)

⑤ 캠프형 → 캠프형을 선택하셨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캠프기간을 적어주세요(____박____일)

⑥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

⑦ 온라인, 비대면(유선, 모바일, PC활용 등) : 녹화 방식

⑧ 기타:

6.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하나만 골라 √(체크)하세요.

___① 평일오전 ___② 평일오후 ___③ 평일저녁 ___④ 주말오전 ___⑤ 주말오후 ___⑥ 기타:

7. 프로그램이 일부 유료로 제공된다면 적절한 본인부담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

8. 다문화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불만이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

를 적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결혼이주여성(남성)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

② 결혼이주여성(남성)이 처한 생활환경(생활조건)을 잘 반영하지 못함

③ 서비스제공 기관으로의 접근(교통)이 어려움

④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함

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의사소통문제, 정보전달문제 등)

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예: 강사 및 강의내용과 수준 등)

⑦ 서비스 홍보부족

⑧ 서비스가 실제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에 부족함(충분성, 연속성)

⑨ 기타:

9. 다음 중 가장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문화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한국사회적응 및 생활정착지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②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 국민연금, 긴급복지, 한부모지원 등)

③ 체류 및 국적취득지원

④ 의료지원

⑤ 심리·정서지원(개인상담/가족상담)

⑥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교육)지원

⑦ 취업지원(취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⑧ 교육지원(검정고시·정규교육지원 등)

⑨ 사회참여·공동체활동 지원

⑩ 가족단위 프로그램

⑪ 다문화 인식 제고(캠페인, 축제, 교육 등)

⑫ 기타:

Ⅲ. 자녀양육 및 돌봄 영역

1. 귀하 자녀의 발달주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체크)하세요.

___① 자녀없음

___② 영유아기

___③ 아동기

___④ 청소년기

___⑤ 성인기

2. 귀하는 부모로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당란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②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③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④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부모교육					

3. *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가 평소 자녀양육 및 돌봄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2순위까지**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견차이

② 바쁘거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③ 체력적인 어려움

④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⑤ 경제적인 어려움

⑥ 편견 또는 차별

⑦ 어려움없음

⑧ 기타:

3-1. * 만 5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가 평소 자녀양육 및 돌봄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해당없음	② 자녀에게 드는 비용부담
③ 가사일/돌봄역할의 부담	④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직장에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의 갈등)
⑤ 자녀와의 대화부족(의사소통 방법 등)	⑥ 자녀와의 갈등(학업, 친구관계, 비행, 게임, 스마트폰 등)
⑦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양육방식 갈등	⑧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⑨ 학부모활동, 교사상담 등의 어려움	⑩ 자녀양육 및 돌봄에 필요한 공적 지원의 부족 (학업, 진학, 진로 등 정보제공, 양육 서비스제공 등)
⑪ 차별과 편견	
⑫ 기타:	

4.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자녀가 있으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해당없음 | ②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감성코칭교육' |
| ③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 ④ 자녀의 '성교육' |
| ⑤ 자녀의 '학습 및 진로교육' | ⑥ 자녀의 언어발달, 이중언어교육 |
| ⑦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 ⑧ 양육과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비스 |
| ⑨ 같은 또래 자녀를 둔 '부모모임' | ⑩ 양육/자녀와의 갈등 관련 '상담(가족상담) 서비스' |
| ⑪ 임신/출산기 지원 | ⑫ 기타: |

5.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귀하의 가정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자녀가 있으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① 가족자원을 활용한다. ⇒ ①번을 선택한 경우 아래 구체적 문항도 √(체크)해주세요.

구체적으로, ① 항상 나 혼자 ② 대체로 나 혼자 ③ 부부가 공동으로
 ④ 대체로 배우자 혼자. ⑤ 항상 배우자가 ⑥ 기타:

- | | |
|------------------------------|------------------------|
| ② 친구, 이웃, 친척 등의 사적 자원을 활용한다. | ③ 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
| ④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 ⑤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한다. |
| 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 | |
| ⑦ 기타: | |

IV. 학습 및 교육 영역

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항목	전혀 못한다	조금 못한다	보통 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① 한국어 말하기					

② 한국어 듣기					
③ 한국어 읽기					
④ 한국어 쓰기					

2. 한국으로 이주한 뒤 학습 또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경험하셨던 학습 또는 교육은 무엇이었나요? **모두** 고르세요.

- ()① 자격증 취득과정
 ()②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③ 평생교육과정
 ()④ 검정고시과정
 ()⑤ 정규교육과정(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⑥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
 ()⑦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⑧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⑨ 기타:

3.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으신 학습 또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해당없음 | ② 자격증 취득과정 |
| ③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 ④ 평생교육과정 |
| ⑤ 검정고시과정 | ⑥ 정규교육과정(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
| ⑦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문화/제도) | ⑧ 교회, 지역모임 등의 지역사회프로그램 |
| ⑨ 일자리, 취업교육 프로그램 | ⑩ 기타: |

4. 학습 및 교육활동을 경험할 때 느꼈던 어려움이나 앞으로 학습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어려움 없음 | ② 접근성의 문제(예: 교통의 불편, 원거리) |
| ③ 낮은 한국어 수준 | ④ 가사/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
| ⑤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 ⑥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 ⑦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 | ⑧ 경제적 부담(예: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
| ⑨ 학습 및 교육과정의 기회부족 | ⑩ 다양하지 않은 교육내용 |
| ⑪ 수준 낮은 교육내용 및 인력(강사) | ⑫ 주변에 함께 학습/교육에 참여할 사람이 없음 |
| ⑬ 기타: | |

V. 취업 및 경제 영역

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아니요⇒ 1-1. 귀하는 앞으로 취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② 네 ⇒

1-2. 귀하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일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 ()②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직장
()③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장 ()④ 기타

1-2-1. 귀하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장(일터)에서 보수(월급 등)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체크)하세요.

- ()① 관리직 ()② 농림어업 ()③ 기능·기술직 ()④ 서비스직
()⑤ 단순노무직 ()⑥ 전문직 ()⑦ 사무직 ()⑧ 판매직
()⑨ 조립·제조업 ()⑩ 다문화 관련직 ()⑪ 기타:

1-4. 귀하는 현재의 직장(일터)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① 가족 또는 친척의 소개 ()② 모국인 친구의 소개
()③ 한국인 친구의 소개 ()④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의 소개
()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⑥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서
()⑦ 본인이 직접 창업 ()⑧ 기타:

1-5 귀하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한국말로 대화하기 어렵다 | ()② 일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
| ()③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 ()④ 돈을 너무 조금 받는다 |
| ()⑤ 상사나 동료의 무섭다 | ()⑥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

() ⑦ 어려움이 없다	() ⑧ 기타:
1-6 다음 중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지원받고 싶은 것을 하나만 골라 √(체크)하세요.	
()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 ② 직장 내 의사소통·대인관계 방법 교육
() ③ 직장 내 다문화 인식 향상 교육	() ④ 직장관련 법률상담 지원
() ⑤ 직장관련 고충상담 지원	() ⑥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⑦ 기타:	
1-7. 귀하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100만-150만원 미만	() ② 50만-100만원 미만
() ③ 200만-250만원 미만	() ④ 150만-200만원 미만
() ⑤ 300만-350만원 미만	() ⑥ 250만-300만원 미만
() ⑦ 300만원 이상	() ⑧ 월급이 없음

③ 기타:

2. 앞으로 취업 또는 이직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골라 √(체크)하세요.

- | | | | |
|--------------|---------------|--------------|------------|
| () ① 관리직 | () ② 농림어업 | () ③ 기능·기술직 | () ④ 서비스직 |
| () ⑤ 단순노무직 | () ⑥ 전문직 | () ⑦ 사무직 | () ⑧ 판매직 |
| () ⑨ 조립·제조업 | () ⑩ 다문화 관련직 | () ⑪ 해당없음 | () ⑫ 기타: |

3. 귀하가 직장(일터)를 찾을 때 느꼈던 어려움 또는 앞으로 일자리를 찾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어려움 없음 | ②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
| ③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 ④ 일자리의 부족 |
| ⑤ 낮은 임금·열악한 일자리 환경 | ⑥ 가족의 반대 |
| ⑦ 낮은 교육 및 학력수준 | ⑧ 기술·기능 등 경력 부족 |
| ⑨ 가족(자녀, 부모)를 케어로 인한 어려움 | ⑩ 본국에서의 경력 및 자격증 불인정 |
| ⑪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몰라서 | ⑫ 기타: |

Ⅵ. 공동체 및 사회참여 영역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빈도를 선택해주세요.

항목	참여경험 없음	참여경험 있음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빈도(횟수)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1년에 3-4회	1년에 1-2회
①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②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③ 학부모 모임						
④ 지역주민 모임						
⑤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⑥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⑦ 종교활동						

2. 귀하께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모임 또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참여하고 싶지 않음 | ② 한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
| ③ 학부모 모임 | ④ 고국친구 또는 친목모임 |
| ⑤ 봉사/취미/동아리 활동 | ⑥ 지역주민 모임 |
| ⑦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 ⑧ 종교활동 |
| ⑨ 기타: | |

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에서의 어려움 또는 앞으로 모임/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1순위: ()번 ⇒ 2순위: ()번

- | | |
|---------------------------|-----------------------------|
| ① 어려움 없음 | ② 가족의 반대, 이해부족 |
|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④ 참여하고 싶은 모임(단체)가 없음 |
| ⑤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 | ⑥ 참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
| ⑦ 일/소득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⑧ 경제적 부담(예: 활동비, 회비, 식사비 등) |
| ⑨ 접근성의 문제(예: 교통의 불편, 원거리) | ⑩ 자녀양육/돌봄 역할의 부담 |
| ⑪ 주변에 함께 참여/활동할 사람이 없음 | ⑫ 기타: |

4. 다음은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 | | |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약간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

5. 귀하가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직장(일터)이 있어서 | ②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
| ③ 교통이 편리해서 | ④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 |
| ⑤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⑥ 이웃들이 좋아서 |
| ⑦ 자녀의 교육 때문에 | ⑧ 문화자원이 많아서 |
| ⑨ 다문화관련 지원서비스가 좋아서 | ⑩ 기타: |

6. 귀하는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계속 생활할 생각이십니까?

- | | | |
|-------|-------------------|----------|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6-1문항으로) | ③ 잘 모르겠다 |
|-------|-------------------|----------|

6-1.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② 직장(일터)을 옮기려고 |
| ③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 ④ 자녀의 교육 때문에 |
| ⑤ 고부간 갈등 때문에 | ⑥ 가족(배우자 등)의 뜻에 따라서 |
| ⑦ 기타: | |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원통계정보, 「강원통계연보」, 2019

김이선·김영란·이해웅,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김이선·정해숙·마경희·전경숙,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6

김이선·최진희·황정미, 「다문화가족 내 성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화영·이명진·양계민,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뉴스 1 보도, 2020.6.17.

설동훈·박신규·이순미·박순영,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5

성미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1

송효진·김소영·안소영·김연재,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7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주민욕구조사」, 2021

장은진,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4.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한국 처우기본법』

[국외문헌]

- Lee, J. A. (2015).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civic multiculturalism policy of Canad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15-23.
- Min, J. J., Choi, S., & Park, H. (2021). Associations between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 social support, and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 status amid the COVID-19 pandemic. *BMC Public Health*, 21(1), 1-10.
- Pagano, A. (2014). Barriers to drug abuse treatment for Latino migrants: Treatment providers' perspectives.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13(3), 273-287.
- Wong, C., & Li, G. (2020). Talking about Casino Gambling: Community Voices from Boston Chinatown.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Publications*. 45.

[인터넷 검색자료]

- https://scholarworks.umb.edu/iaas_pubs/45
-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or-the-public/immigrant-rights-and-services/#:~:text=Immigrant%20Rights%20and%20Services%20%3A%20Office,Stringer>
- <https://immigrantsrising.org/educational-partnerships/high-school-partnerships/>
- <http://mcfsorg.com/>
- <https://kidsnewtocanada.ca/beyond/resources>
-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jpcglclefindmkaj/viewer.html?pdfurl=https%3A%2F%2Fwww.camh.ca%2F%2F-%2Fmedia%2Ffiles%2Fcommunity-resource-sheets%2Fproblem-gambling-pdf.pdf&clen=200343&chunk=true>
- <https://consejocounseling.org/children-youth-and-family-services/>
- <https://www.nyic.org/our-work/campaigns/>
- <https://oac.ac/home-project/>
- <https://www.multiculturalfamilies.org/programs-services/comers-to-british-columbia>
- <https://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getting-help/wccc>
- <http://ndl.ethernet.edu.et/bitstream/123456789/34679/1/12.pdf.pdf>
- <https://www.acf.hhs.gov/orr/policy-guidance/state-new-york-programs-and-services-locality>
- Lane, S. R., Palley, E. S., & Shdaimah, C. S. (2019). Social welfare policy in a changing world. SAGE Publications.
- <https://www.rescue.org/united-states/new-york-ny#how-does-the-irc-help-refugees-in-new-york>

<https://catholiccharitiesny.org/what-we-do/welcoming-integrating-immigrants-refugees>
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services/child_support/Korean_Cash_Assistance_and_Child_Support.pdf
<https://growingupnyc.cityofnewyork.us/ko/programs/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ffordable-housing-income-eligibility.pdf
<https://newdestinyhousing.org/housing-help/nycha-public-housing/>
<https://housingconnect.nyc.gov/PublicWeb/>
<https://wespeaknyc.cityofnewyork.us/>
<https://www1.nyc.gov/site/dycd/services/family-support/nda-adult-literacy-program-benl-esol.page>
<https://www1.nyc.gov/site/dycd/services/jobs-internships/about-syep.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ffordable-housing-guide-for-applicants-with-disabilities-korean.pdf>
<https://dol.ny.gov/coronavirus-aid-relief-and-economic-security-cares-act>
<https://dol.ny.gov/EWF>
https://www.dfs.ny.gov/consumers/health_insurance/cobra_faqs
https://www.dfs.ny.gov/consumers/coronavirus/health_insurance_faqs
<https://www1.nyc.gov/site/immigrants/help/city-services/health.page>
<https://access.nyc.gov/programs/covid-19-vaccines/>
<https://www.dfs.ny.gov/consumers/coronavirus/mortgage>
[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 Program \(getemergencybroadband.org\)](https://www.getemergencybroadband.org/)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covid-information>
<https://www1.nyc.gov/site/immigrants/help/legal-services/actionnyc.page>
<https://sites.google.com/foodeducationfund.org/foodhubnyc>
<https://www.kfamla.org/korean/upage.aspx?pageid=u10>
<https://www.defineamerican.com/hollywood>
<https://portal.ct.gov/DCF/ODE/Home>
<https://eclkc.ohs.acf.hhs.gov/mental-health/article/supporting-families>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dream-act-2017-bill-summary/?gclid=CjwKCAjwy7CKBhBMEiwA0Eb7aq_aEChK1FSqML6YXKsAvtaYtimHX_gX6ovD1QgFwgZt-z9_XoqdbpBoC3lkQAvD_BwE